

인허가/설비/토목 진행사항 보고

<신 명>

자원순환시설(4840) 신축 공사

1 조직도

2 사업변경내역(개요, 진행상황)

3 투입비용

4 일정표

5 사업장배치도

6 설비도면

7 최근현황 사진

8 진행 영상

2025년 10월 30일

1 조직도



구분	성명	주요업무
재무/예산	안대균	자금의 수급, 집행 관리
토목/건축	김동오, 김대홍, 고솔선	공사진행, 공사의 견적 및 이력관리, 공사 스케줄 관리
구매/설비	손미경	기계의 구매, 설비, 이력관리
환경/인허가	김교중	인허가 사업계획 작성, 관할지자체 인허가 승인 진행
영상/사진	김현아	인허가 서류 제출용 자료 생성
취합/작성	김현아	부분별 자료 수집 및 취합, 문서 작성
검토/승인	고광중, 이주한	검토, 보완 요청 및 수정 지시, 승인 의사결정

2 사업개요

공 사 명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신축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9외 (8필지)								
지 역 지 구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309-9	잡	839	309-13	중	326	310	중	2,307
	309-10	중	803	909-21	중	937	310-1	잡	463
	309-12	중	109	309-34	잡	150	311-1	잡	612
	합 계 6,546㎡ (1,980평)								
건 축 면 적	1,231.765㎡ (373평)								
건 폐 율	18.81%								
용 적 율	19.03%								
건 축 구 조	일반철골구조								
최 고 높 이	1동 - 18.8m , 2동 - 7.2m								

■ 면 적 개 요 (동별 및 층별 면적)

구분		기허가부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소계(㎡)
1동	1층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기계설비동	1,203.965	364평
2동	1층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전기실	21.000	
	2층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운전실	21.000	
합 계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1,245.965	75.315감소

※웬스시공				
구분	전체 구간	시공 구간	미시공 구간	비고
독립기초	274m	130m	144m	
옹벽	132m	32m	100m	100m H 3m 32m 1.5~2m
합 계	406m	162m	244m	

2 인허가 진행 상황

작성 기준일 : 2025.10.22

연번	날짜	내용	비고
1	2024.10.14	2024년 제6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조건부 수용
2	2025.02.18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보완 통보	
3	2025.02.28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 촉구 통보[상패동 309-9 외 8필지]	
4	2025.03.05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 계획서 제출	
5	2025.03.07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 계획서 조건부 적합 통보	
6	2025.03.10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처리[상패동 309-9 외 8필지]	
7	2025.03.10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가입	2025.03.10~2027.10.31
8	2025.03.1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발급	
9	2025.04.15	착공신고서 접수[상패동 309-9 외 8필지]	
10	2025.05.14	착공신고서 처리[상패동 309-9 외 8필지]	
11	2025.05.20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신청서 접수[상패동 309-9 외 8필지]	
12	2025.06.09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신청서 처리[상패동 309-9 외 8필지]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발급	
13	2025.06.25	건축위원회 구조심의 신청 접수	
14	2025.08.07	2025년 제1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심의일 : 2025.07.14 조건부 가결
15	2025.09.09	2025년 제1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알림	적정

3 투입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기지급	집행예정	비고
부지 매입	5,081,544	5,081,544	0	토지 48.5억 / 취득세 2.3억
소계	5,081,544	5,081,544	0	
철거공사	105,500	105,500	0	
개발행위 허가 등 용역비	144,790	138,890	5,900	
토목 공사	726,931	567,800	159,131	가계약 (장형기업)
건축 공사	782,072		782,072	
전기 공사	383,730		383,730	예상금액
소방 공사	75,000		75,000	
기계 설치 공사	680,000		680,000	
기계 설비	1,109,100	482,100	627,000	
장비 구입	540,000		540,000	
소계	4,547,122	1,294,290	3,252,832	
합계	9,628,666	6,375,834	3,252,832	

총 공사예상금액 96.29억 / **기지급 63.76억**, 집행예정 32.53억
기지급 63.76억 / 토지관련차입금 28억, 환경(정책)차입금 4.5억, 자체조달 31.26억
 집행예정 32.53억 / 환경(정책)차입금 25.8억, 자체조달 6.73억
 총 소요자금 96.29억 / 토지관련차입금 28억, 환경(정책)차입금 30.3억, 자체조달 37.99억

3 투입비용(상세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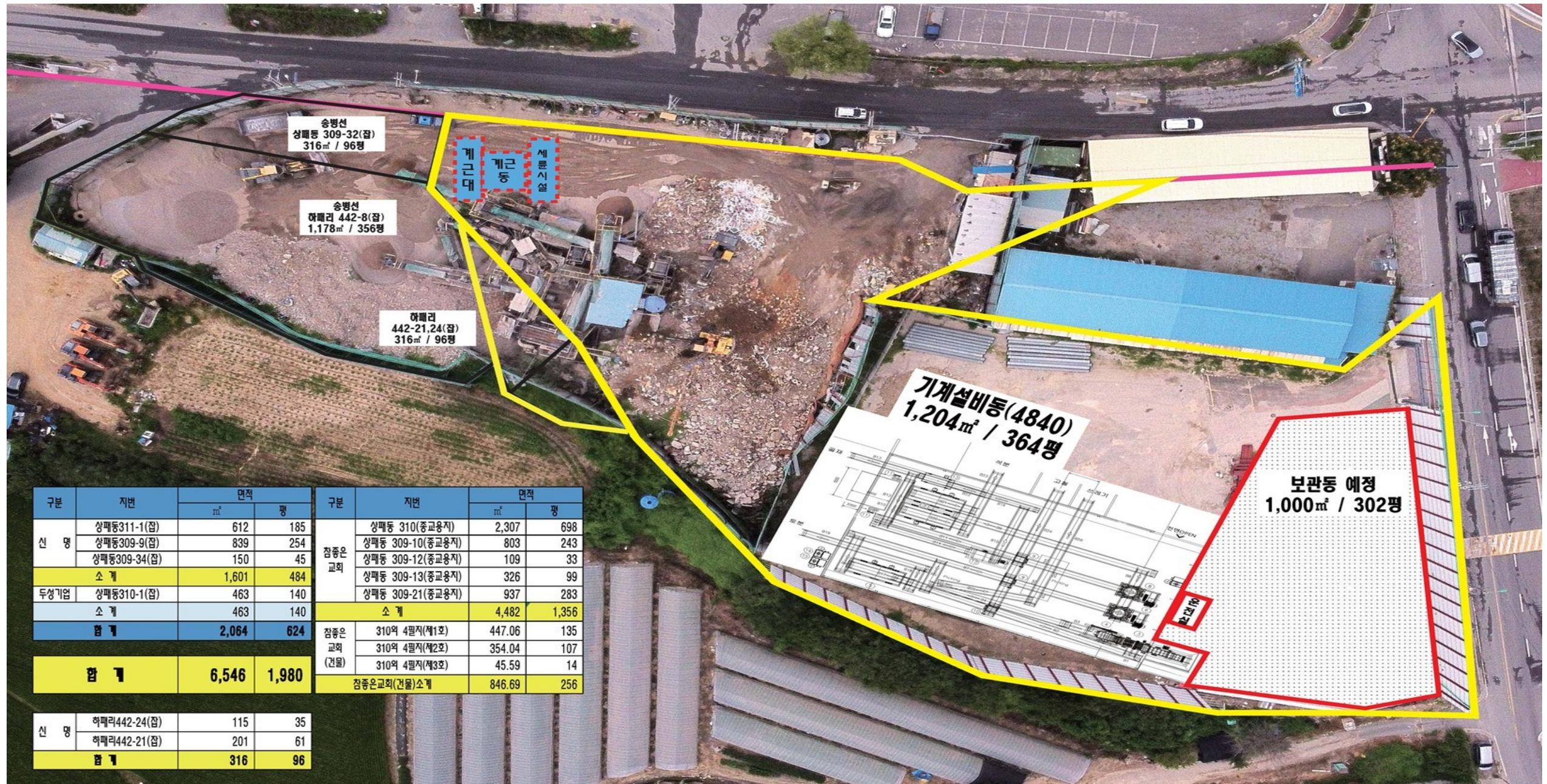
구분		내용	금액	소계	비고
부지 매입 상패동 310의 4필지 / 건물 3동	참중은교회	토지 대금	4,850,000	5,081,544	집행 완료 토지4,482㎡(1,356평) 평당 357만원
		취득세 등 부대비용	231,544		
소계			5,081,544	5,081,544	
철거공사 및 철거 공사 감리 등 부대비용	(주)장형기업	철거공사	93,500	105,500	집행 완료
	프라임종합건축사 / (주)서강지오테크	철거 공사 감리 /지질조사	12,000		
개발행위 허가 용역 및 건축 설계,감리	(주)네오파엔디	개발행위 허가 용역	70,000	144,790	
	제이엔건축사사무소 /피투비이엔지 /제일건설안전기술 의	건축 설계 및 감리 /구조 감리 소방설계 /기술지도 의	74,790		
토목 공사	(주)장형기업	기타 토목	726,931	726,931	가계약
건축 공사	(주)장형기업	건축	782,072	782,072	
전기 공사	서부전력	외부전기	193,730	383,730	예상금액
	주현전기	내부전기	190,000		
소방 공사	(주)장형기업	소방	75,000	75,000	
기계 설치 공사	(주)성진플랜트	기계 설치	680,000	680,000	
기계 설비	금호중기건설 제이씨산업개발	콘크라샤CC-1680 콘크라샤CSH-1680	251,200	251,200	집행 완료
	구성기업	4840 죠크라샤 set 쥬/호퍼/진동피더/스칼핀스크린	130,000	130,000	집행 완료
	(주)성진플랜트	컨베어벨트(26EA)	500,000	727,900	예상금액
	성진플랜트 /영남산업기계 /동양마그넷 /유광풍력 /에스알이엔씨	진동스크린 /자력선별기 /송풍기 /대기집진기	227,900		
장비 구입	볼보그룹코리아(주)	전기포크레인(EC500F) 2.4㎡ /3.75억 전기장차(복합형) /1.65억	540,000	540,000	
소계			4,547,122	4,547,122	
합계			9,628,666	9,628,666	

3 투입비용(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기지급	집행예정	비고	
부지 매입 상패동 310의 4필지 / 건물 3동	참중은교회	우리B 토지시설자금 대출 /28억(금리 3.67%) 자체 조달 /22.82억 소계 50.82억	4,850,000		집행 완료 토지4,482㎡(1,356평) 평당 357만원	
			231,544			
소계			5,081,544	-		
철거공사 및 철거 공사 감리 등 부대비용	(주)장형기업	환경산업육성자금 대출 /30.3억 (사용 4.5억 / 잔액 25.8억) - 4분기 금리 1.44%(분기변동) -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자체 조달 /15.17억 소계 45.47억	93,500		집행 완료	
	프라임종합건축사 / (주)서강지오테크		12,000			
개발행위 허가 용역 및 건축 설계, 감리	(주)네오피앤디		70,000			
	제이앤건축사사무소 / 피투비이엔지 / 제일건설안전기술 외		68,890	5,900		
토목 공사	(주)장형기업		567,800	159,131	가계약	
건축 공사	(주)장형기업			782,072		
전기 공사	서부전력				193,730	예상금액
	주현전기				190,000	
소방 공사	(주)장형기업				75,000	
기계 설치 공사	(주)성진플랜트				680,000	
기계 설비	금호중기건설 제이씨산업개발		251,200		집행 완료	
	구성기업		130,000		집행 완료	
	(주)성진플랜트			500,000	예상금액	
	성진플랜트 / 영남산업기계 / 동양마그넷 / 유광풍력 / 에스알이엔씨		100,900	127,000		
장비 구입	볼보그룹코리아(주)			540,000		
소계			1,294,290	3,252,832	4,547,122	
합계			6,375,834	3,252,832	9,628,666	

5 사업장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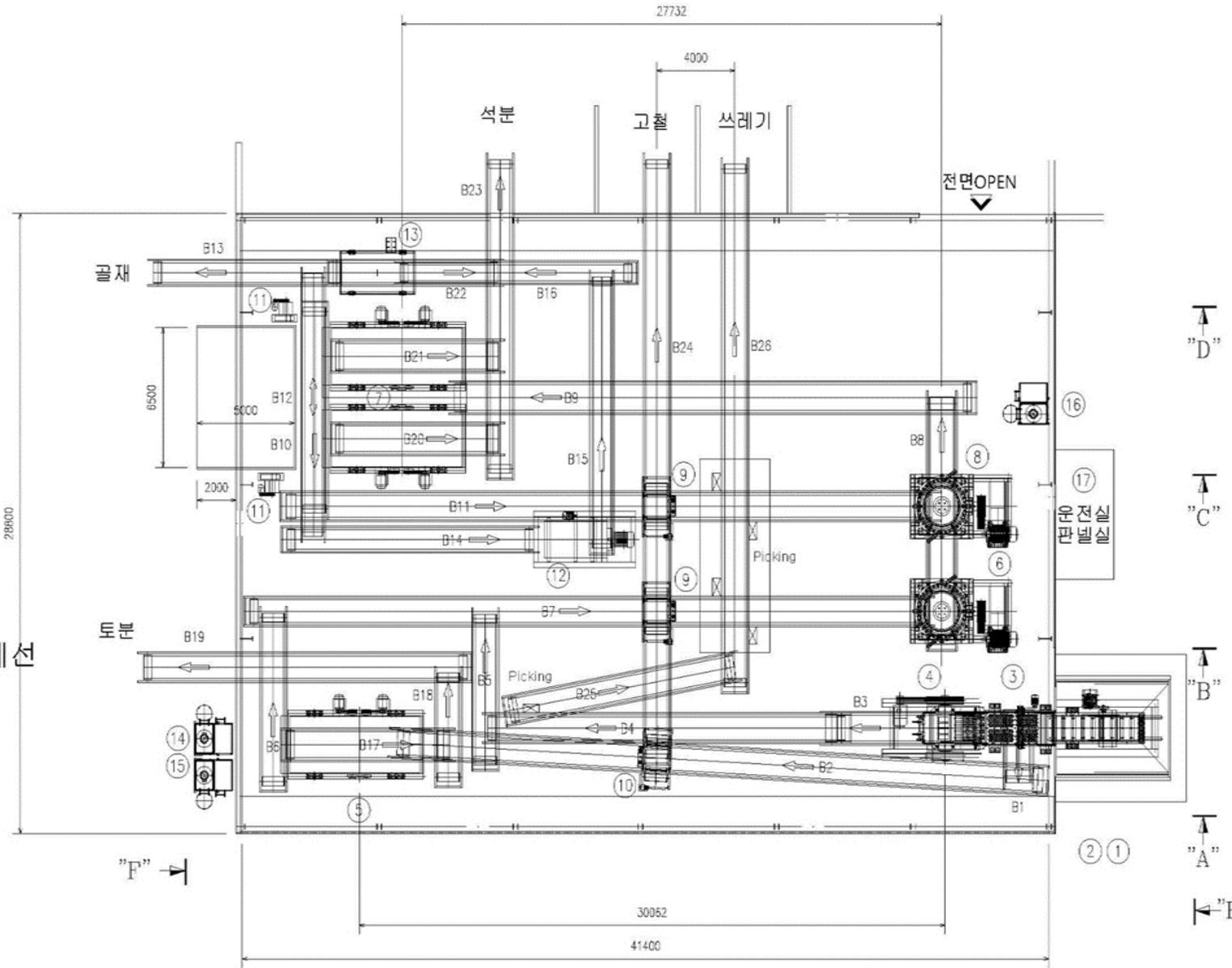
구분	지번	면적	
		㎡	평
신 명	상패동311-1(잡)	612	185
	상패동309-9(잡)	839	254
	상패동309-34(잡)	150	45
소 계		1,601	484
두성기업	상패동310-1(잡)	463	140
	소 계	463	140
합 계		2,064	624

구분	지번	면적	
		㎡	평
점종은 교회	상패동 310(종교용지)	2,307	698
	상패동 309-10(종교용지)	803	243
	상패동 309-12(종교용지)	109	33
	상패동 309-13(종교용지)	326	99
	상패동 309-21(종교용지)	937	283
소 계		4,482	1,356
점종은 교회 (건물)	310억 4필지(제1호)	447.06	135
	310억 4필지(제2호)	354.04	107
	310억 4필지(제3호)	45.59	14
점종은교회(건물)소계		846.69	256

신 명	하패리442-24(잡)	115	35
	하패리442-21(잡)	201	61
합 계		316	96

6 설비도면

신명 4840기계장치 도면 및 모터사양



No.	품명	규격	설비 수량	성진플랜트(kw)		도면 - 25.07.05	
1	공급 호퍼	15m³	1			* 모터 총 수량	
2	진동 피이더	VF-1248	1	37		(콘베어 모터 26개 포함)	
3	스칼핑 스크린	SS-1530	1	19		200kw이상	2
4	1차 조 크러셔	JC-4840	1	160		100~200미만	2
5	1차 진동스크린(토분)	OP2-2470	1	60	30*2	100미만	44
6	2차 콘 크러셔	CC-1680	1	220		기계장치	22
7	2차진동스크린	OP2-2470	2	120	(30*2)*2	이송시설	26
8	2차 콘 크러셔	CSH-1680	1	220		48개	
9	전자석	D-EMSC 7	2	15	7.5*2		
10	전자석	SEMS 160H	1	10	10		
11	송풍기+더스트박스	TURBO-55	2	110	55*2		
12	3차 버켓 타격 박리기	ø1718x3200L	1	132	110+22		
13	3차 진동스크린	OP2-1536	1	22			
14-16	집진기	80m³/min	3	17	5.5*3		
17	운전실 + 전기판넬						
계			18	1141.5kW			
B1	NO.01 BELT CONVEYOR	1200Wx4.5M	1	11		* 콘베어벨트	
B2	NO.02 BELT CONVEYOR	1050Wx34M	1	45		(B1~B26) 총 길이	
B3	NO.03 BELT CONVEYOR	1200Wx8M	1	11		407m	
B4	NO.04 BELT CONVEYOR	1050Wx19.5M	1	22		너비W	수량
B5	NO.05 BELT CONVEYOR	1050Wx7M	1	7.5		900	6
B6	NO.06 BELT CONVEYOR	1050Wx8M	1	7.5		76.0	
B7	NO.07 BELT CONVEYOR	1050Wx34.5M	1	30		1050	13
B8	NO.08 BELT CONVEYOR	1400Wx11.5M	1	15		1200	3
B9	NO.09 BELT CONVEYOR	1200Wx29M	1	37		41.5	
B10	NO.10 BELT CONVEYOR	1050Wx9.5M	1	7.5		1400	4
B11	NO.11 BELT CONVEYOR	1050Wx32.5M	1	30		합계	26
B12	NO.12 BELT CONVEYOR	900Wx12M	1	11	정역	407.0	
B13	NO.13 BELT CONVEYOR	900Wx16M	1	11			
B14	NO.14 BELT CONVEYOR	900Wx14M	1	15			
B15	NO.15 BELT CONVEYOR	900Wx14M	1	11			
B16	NO.16 BELT CONVEYOR	900Wx12M	1	11			
B17	NO.17 BELT CONVEYOR	1400Wx9M	1	11			
B18	NO.18 BELT CONVEYOR	1050Wx5M	1	7.5			
B19	NO.19 BELT CONVEYOR	1050Wx16.5M	1	15			
B20	NO.20 BELT CONVEYOR	1400Wx9M	1	11			
B21	NO.21 BELT CONVEYOR	1400Wx9M	1	11			
B22	NO.22 BELT CONVEYOR	900Wx8M	1	7.5			
B23	NO.23 BELT CONVEYOR	1050Wx18M	1	15			
B24	NO.24 BELT CONVEYOR	1050Wx29.5M	1	22			
B25	NO.25 BELT CONVEYOR	1050Wx12M	1	11			
B26	NO.26 BELT CONVEYOR	1050Wx25M	1	15			
계			26	408.5kW			
TOTAL POWER				1550.0kW			

7 진행상황(최근현황)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수신 (주)신명(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서로 339-18)

(경유)

제목 2024년 제6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상패동 309-9번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변경(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하여 세움터 등록 후 재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결과: 조건부 수용

○ 조건부 사항:

- 진입로 후퇴 후 우회전 차선 확보(중차량 회전반경 확보)
- 선업교 외 교통처리계획 추가(교량 진입 중차량 분산)
- 건물 배치 재검토(도로선형과 일치). 끝.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장영균 도시계획상임 팀장 황원준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전결 2024. 10. 14.

협조자

시행 도시재생과-11686 (2024. 10. 14.)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351 팩스번호 031-860-2663 / acko2704@korea.kr / 비공개(6)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수신 (주)신명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보완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제26073(2024.11.21.)호로 접수하신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2025. 2. 28.(금)까지 보완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기한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가.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2023.10.16.)]

나. 승인내역

신청 내역	부지 확장	영업대상 폐기물 추가 (건설오니)	처리용량 증설 (400톤/시간)
승인 여부	승인	승인 불가	승인 불가

다. 보완사항

- 부지확장 건에 대한 관련 서류 재제출(승인 불가 사항 내용 삭제)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이현호 청소행정팀장 최병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전결 2025. 2. 14.

협조자

시행 환경보호과-7424 (2025.02.14)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환경보호과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251 팩스번호 031-860-2678 / gusgh3346@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수신 (주)신명 귀중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보완 촉구 통보[상패동 309-9 외 8필지]

1. 우리시 민원-16444(2024. 7. 18.)호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축)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있어 통보하였으나,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촉구 통보 하오니 2025. 3. 6.(목)까지 보완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환경보호과

- 건축 용도인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나 본 건축허가 검토서에는 자원순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법 및 주변 영향에 대한 세부 검토가 불가능함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특히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은 주변 환경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업지는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변경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축) 신청서를 반려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서인 경우는 1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이 주 한	②생년월일 115811-0004005
	③사무실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서로 339-18(상폐동) (전화번호 : 031-863-1484)	
사업 개요	④상호(명칭) (주)신명	⑤사업자등록번호 127-81-21842
	⑥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1,000 백만원
	⑧영업대상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페블럭, 폐기와, 폐금속류,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⑨시설·장비 설치예정지 경기도 동두천시 309-9 외 8필지 (부지면적 : 6,546㎡)	
	⑩사무실 예정지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서로 339-18(상폐동)	
	⑪사업착수 예정일 2025. 03. .	⑫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예정일 2025. 03. .

⑬시설·장비 설치 내용

시설·장비명	규격(처리능력)	방지시설명	규격(처리능력)
⑭변경 내용	변경 전 " 별 첨 "		
	변경 후 " 별 첨 "		
⑮변경 사유	사업장부지 및 처리시설소재지 변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2월 일

제출인 : (주)신명 대표이사 이주한 (서명)



경기도 동두천시장 귀하

별첨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역서

< 변경 전 >

구분	시설 . 장비명				시설규격 (능력)	방지시설	용량	수량
	시설명	규격	용량	수량				
	호퍼(그리즐리피더)	15m'	22.5kW (30HP)	1				
파쇄 분쇄 시설	파쇄시설(1차) (조크라샤)	KDPJ-4230	75kW (100HP)	1	800톤/일 (100톤/시)	-	-	-
	파쇄시설(2차) (콘크라샤)	CC-1300	150kW (200HP)	1				
	파쇄시설(3차) (임팩트크라샤)	-	131.3kW (175HP)	1				
분리 선별 시설	진동스크린(1차)	2464×6000	30kW (40HP)	1				
	진동스크린(2차)	2100×6000	30kW (40HP)	1				
	진동스크린(3차)	1500×3600	15kW (20HP)	1				
	자력선별기	-	11.3kW (15HP)	1				
	자력선별기	-	5.6kW (7.5HP)	1				
	풍력선별기	200CMM× 400mmAq	37.5kW (50HP)	2				
이송시설	벨트콘베어 1	900W×10m	10HP	1				
	벨트콘베어 2	900W×26m	30HP	1				
	벨트콘베어 3	900W×5m	10HP	1				
	벨트콘베어 4	900W×5m	10HP	1				
	벨트콘베어 5	1000W×5m	10HP	1				
	벨트콘베어 6	900W×7m	20HP	1				
	벨트콘베어 7	900W×14m	20HP	1				
	벨트콘베어 8	900W×11m	15HP	1				
	벨트콘베어 9	900W×8m	15HP	1				
	벨트콘베어 10	900W×13m	10HP	1				
	벨트콘베어 11	1050W×9m	20HP	1				
	벨트콘베어 12	900W×27m	15HP	1				
	벨트콘베어 13	900W×23m	20HP	1				
	벨트콘베어 14	900W×14m	20HP	1				
	벨트콘베어 15	900W×10m	20HP	1				
	벨트콘베어 16	900W×10m	20HP	1				

구분	내역
영업대상 폐기물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페블럭, 폐기와, 폐금속류,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보관시설	- 보관시설 : 4,998m ³ (833m ² ×6m)×1 - 허용보관량 : 8,000톤/일 (비중 1.6)
기술능력	- 손미경(대기환경산업기사, 98203160307M) - 김교중(폐기물처리기사, 08201012719Z) - 이주한(경력안정기술자, 2021D13)
장비	- 버킷로더(경기06로2991), 굴삭기(경기02노2404), 굴삭기(경기02보3022)
사업장 소재지	- 309-8(115m ²), 309-9(937m ²), 309-23(7m ²), 309-24(178m ²), 309-25(35m ²), 311-1(852m ²), 311-2(31m ²), 310-1(268m ²), 309-31(195m ²), 648-17(1,652.9m ²), 309-32(201m ²) - 총면적 : 4,471.9m ² (11필지)

< 변경 후 >

구분	시설, 장비명				시설규격 (능력)	방지시설	용량	수량
	시설명	규격	용량	수량				
	호퍼			20㎡	1			
파쇄 분쇄 시설	파쇄시설(1차) 쥬크라샤(습식)	JC-4840	160kW	1	800톤/일 (100톤/시)	여과집진시설	80㎡/분	1
	파쇄시설(2차) 콘크라샤(습식)	CC-1680	220kW	1		여과집진시설	80㎡/분	1
	파쇄시설(3차) 콘크라샤(습식)	CSH-1680	220kW	1		여과집진시설	80㎡/분	1
	파쇄시설(4차) 버켓타격박리기(습식)	∅1718×3200L	110kW +22kW	1				
분리 선별 시설	진동피더	VF-1248	30kW	1				
	스칼핑스크린	SS-1842	15kW	1				
	진동스크린 1	OP1-2470	30kW×2	1				
	진동스크린 2	OP2-2470	30kW×2	1				
	진동스크린 3	OP2-2470	30kW×2	1				
	진동스크린 4	OP3-1536	15kW	1				
	자력선별기	SEMS-200	10kW	1				
	자력선별기	SEMS-150	7.5kW	2				
	풍력선별기	55kW	55kW	3				
이송시설	벨트콘베어 1	1050W×7M	15kW	1				
	벨트콘베어 2	1050W×25M	22kW	1				
	벨트콘베어 3	1050W×8M	11kW	1				
	벨트콘베어 4	1050W×38M	37kW	1				
	벨트콘베어 5	1200W×10.5M	15kW	1				
	벨트콘베어 6	1200W×32M	45kW	1				
	벨트콘베어 7	1050W×9.5M	11kW	1				
	벨트콘베어 8	1050W×38M	30kW	1				
	벨트콘베어 9	900W×8M	7.5kW	1				
	벨트콘베어 10	900W×10M	11kW	1				
	벨트콘베어 11	900W×9M	7.5kW	1				
	벨트콘베어 12	900W×9M	7.5kW	1				
	벨트콘베어 13	900W×15M	11kW	1				
	벨트콘베어 14	1050W×4M	11kW	1				
	벨트콘베어 15	1050W×41M	37kW	1				
	벨트콘베어 16	900W×5M	11kW	1				
	벨트콘베어 17	1200W×8M	15kW	1				
	벨트콘베어 18	900W×6M	11kW	1				
	벨트콘베어 19	900W×25M	22kW	1				
	벨트콘베어 20	900W×17M	11kW	1				
	벨트콘베어 21	750W×7M	7.5kW	1				
	벨트콘베어 22	750W×7M	7.5kW	1				
	벨트콘베어 23	750W×5M	7.5kW	1				
	벨트콘베어 24	750W×13M	7.5kW	1				
	벨트콘베어 25	750W×5M	7.5kW	1				
	벨트콘베어 26	750W×3M	7.5kW	1				
	벨트콘베어 27	750W×8M	7.5kW	1				
	벨트콘베어 28	1050W×23M	15kW	1				
	벨트콘베어 29	1050W×23M	15kW	1				

구분	내역
영업대상 폐기물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금속류,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보관시설	- 보관시설 : 14,700m ³ (1,000m ³ ×14.7mH) - 허용보관량 : 22,050톤/27일 (비중 1.5)
기술능력	- 손미경(대기환경산업기사, 98203160307M) - 김교중(폐기물처리기사, 08201012719Z) - 이주한(경력인정기술자, 2021D13)
장비	- 버킷로더(경기03노2991), 굴삭기(경기02노2404), 굴삭기(경기02보3022)
사업장 소재지 (처리시설 소재지)	- 309-34(150m ²), 309-9(839m ²), 311-1(612m ²), 310-1(463m ²), 310(2,307m ²), 309-10(803m ²) 309-21(937m ²), 309-12(109m ²), 309-13(326m ²) - 총면적 : 6,546m ² (총 9필지)

1. 사업 개요

가. 회사 개요

- 1) 사업장명 : (주)신명
- 2)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서로 339-18(상폐동)
[경기도 동두천시 상폐동 309-9 외 8필지]
- 3) 생산품목 : 순환골재

나. 사업 개요

당 사업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파쇄선별 등의 효율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이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의 밀폐화, 최신 집진시설의 설치, 완벽한 차음벽 설치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 신청 사유

- 별첨과 같이 변경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 계획서 제출

2. 폐기물처리 시설·장비 내역서

구분	시설·장비명				시설규격 (능력)	방지시설	용량	수량
	시설명	규격	용량	수량				
	호퍼		20m ³	1				
파쇄 시설	파쇄시설(1차) 조크라샤(습식)	JC-4840	160kW	1	800톤/일 (100톤/시)	여과집진시설	80m ³ /분	1
	파쇄시설(2차) 콘크라샤(습식)	CC-1680	220kW	1		여과집진시설	80m ³ /분	1
	파쇄시설(3차) 콘크라샤(습식)	CSH-1680	220kW	1		여과집진시설	80m ³ /분	1
	파쇄시설(4차) 버켓타격박리기(습식)	∅1718×3200L	110kW +22kW	1				
분리 선별 시설	진동피더	VF-1248	30kW	1				
	스칼핑스크린	SS-1842	15kW	1				
	진동스크린 1	OP1-2470	30kW×2	1				
	진동스크린 2	OP2-2470	30kW×2	1				
	진동스크린 3	OP2-2470	30kW×2	1				
	진동스크린 4	OP3-1536	15kW	1				
	자력선별기	SEMS-200	10kW	1				
	자력선별기	SEMS-150	7.5kW	2				
	풍력선별기	55kW	55kW	3				
이송 시설	벨트콘베어 1	1050W×7M	15kW	1				
	벨트콘베어 2	1050W×25M	22kW	1				
	벨트콘베어 3	1050W×8M	11kW	1				
	벨트콘베어 4	1050W×38M	37kW	1				
	벨트콘베어 5	1200W×10.5M	15kW	1				
	벨트콘베어 6	1200W×32M	45kW	1				
	벨트콘베어 7	1050W×9.5M	11kW	1				
	벨트콘베어 8	1050W×38M	30kW	1				
	벨트콘베어 9	900W×8M	7.5kW	1				
	벨트콘베어 10	900W×10M	11kW	1				
	벨트콘베어 11	900W×9M	7.5kW	1				
	벨트콘베어 12	900W×9M	7.5kW	1				
	벨트콘베어 13	900W×15M	11kW	1				
	벨트콘베어 14	1050W×4M	11kW	1				
	벨트콘베어 15	1050W×41M	37kW	1				
	벨트콘베어 16	900W×5M	11kW	1				
	벨트콘베어 17	1200W×8M	15kW	1				
	벨트콘베어 18	900W×6M	11kW	1				
	벨트콘베어 19	900W×25M	22kW	1				
	벨트콘베어 20	900W×17M	11kW	1				
	벨트콘베어 21	750W×7M	7.5kW	1				
	벨트콘베어 22	750W×7M	7.5kW	1				
	벨트콘베어 23	750W×5M	7.5kW	1				
	벨트콘베어 24	750W×13M	7.5kW	1				
	벨트콘베어 25	750W×5M	7.5kW	1				
	벨트콘베어 26	750W×3M	7.5kW	1				
	벨트콘베어 27	750W×8M	7.5kW	1				
	벨트콘베어 28	1050W×23M	15kW	1				
	벨트콘베어 29	1050W×23M	15kW	1				

3. 건설폐기물의 수거 및 제품의 판매현황

가. 폐기물의 수급 예상치

폐기물의 종류	수급업소명	수급예상량	성상	비고
건설폐기물	관공서 및 건설회사	240,000톤/년 (800톤/일)	고상	

나. 제품의 공급 예상치

제 품 명	공급업소명	공급예상량	성상	비고
순환골재	인·허가 건설현장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회사	148,500톤/년 (495톤/일)	고상	

다.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처리량

폐기물종류	성상	처리에상량	비고
건설폐기물	고상	800톤/일	- 용도 : 건설폐기물처리 - 처리예상량 산정 시간당 처리능력 : 100톤/시 일일가동시간 : 8시간/일 일일처리예상량 : 100톤/시 × 8시간/일 = 800톤/일

4.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 및 보관량 산출근거

가. 보관시설 및 보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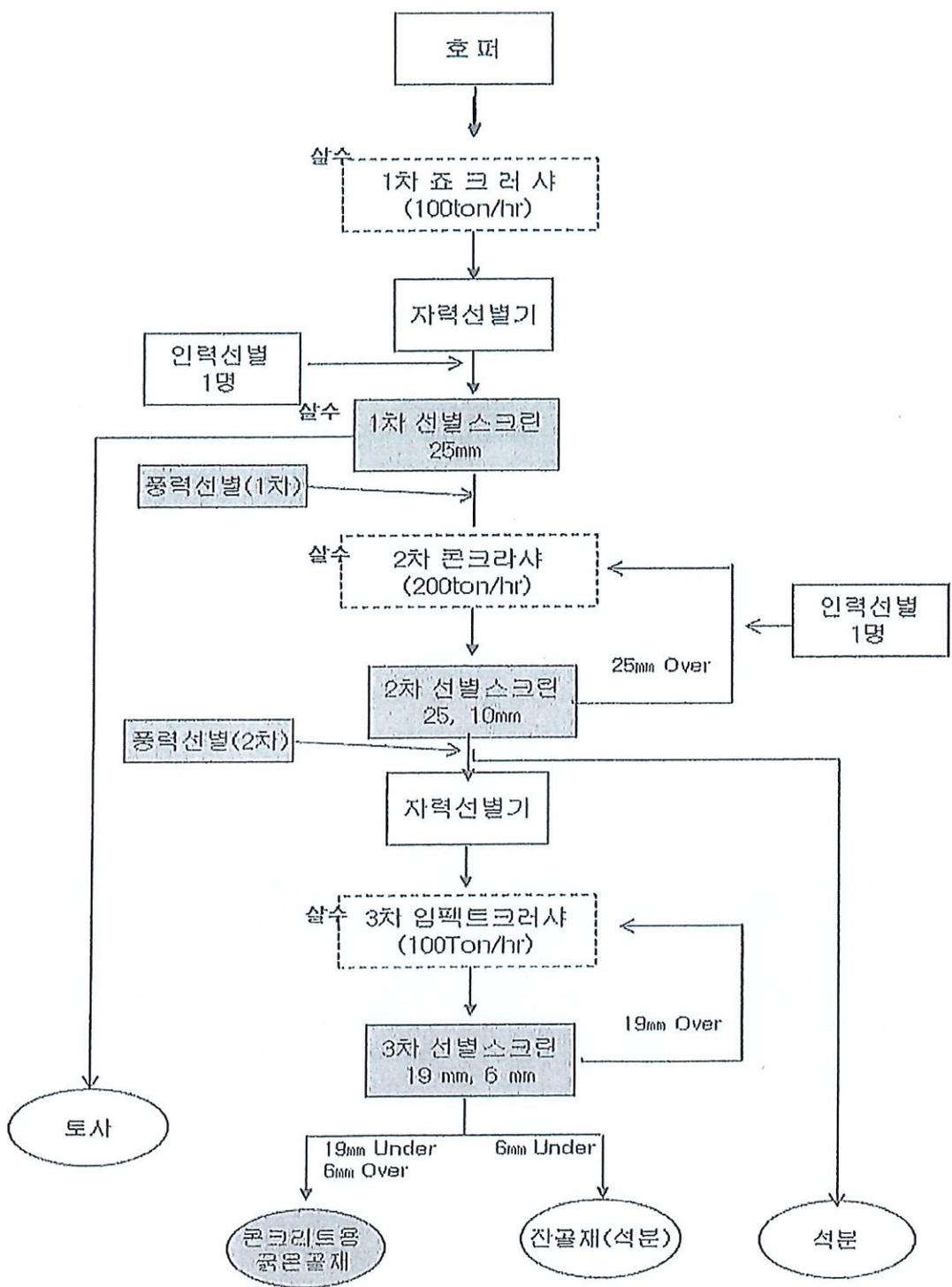
- 1) 처리능력 : 800톤/일 (8시간/일 기준)
- 2) 보관시설 : $25\text{mW} \times 40\text{mL} \times 14.7\text{mH} = 14,700\text{m}^3$
- 3) 보관능력
 - ① 허용보관량 : $14,700\text{m}^3 \times 1.5(\text{비중}) = 22,050\text{톤}$
 - ② 보관능력 : $22,050\text{톤} \div 800\text{톤/일} = 27\text{일}$

나.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내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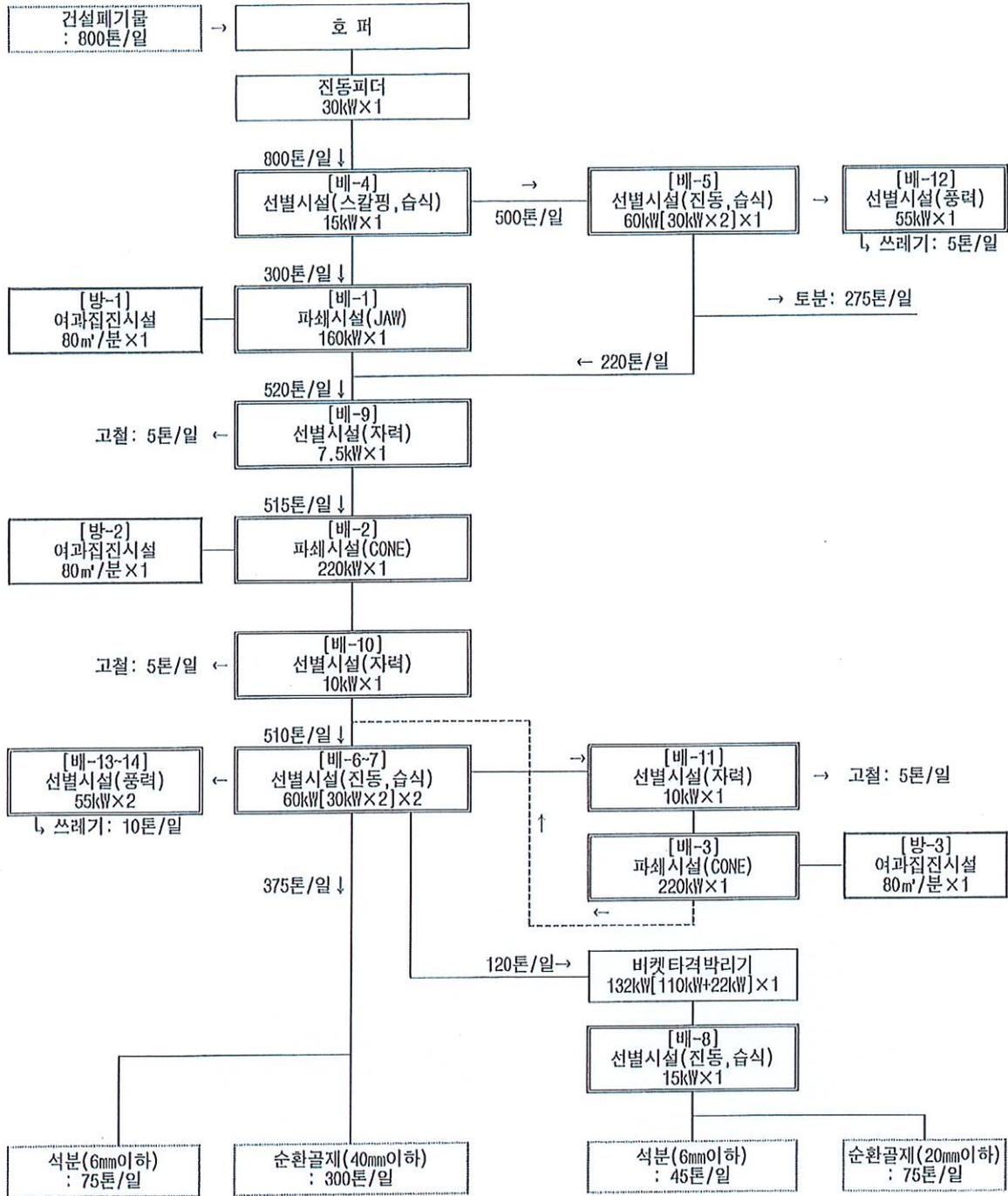
구 분	규 격	보 관 량	허용보관일	비고
보관시설	$1,000\text{m}^2 \times 14.7\text{mH} = 14,700\text{m}^3$	22,050톤 (비중 : 1.5)	27일	

5. 폐기물처리 공정도

< 변경 전 >



< 변경 후 >



※ 선별(스칼핑), 자력, 풍력시설은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시설임.

6. [별표 1의2]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기 준	확 보 사 항
<p>1. 공통사항</p> <p>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p> <p>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p> <p>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p> <p>바. 페이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페이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페이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p> <p>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p> <p>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p>	<p>- 해당사항 없음</p> <p>-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함.</p> <p>-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함.</p> <p>-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허가 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함.</p> <p>- 규격에 맞춰 사전처리 후 배출함.</p> <p>- 해당사항 없음</p> <p>- 해당사항 없음</p> <p>- 가연성 폐기물은 분리하여 처리함.</p> <p>- 폐금속류는 분리하여 현장에서 처리함.</p>

기 준	확 보 사 항																
<p>1의2. 수집·운반의 경우</p> <p>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보관의 경우</p> <p>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페콘크리트 및 페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제지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th> </tr> </thead> <tbody> <tr> <td>①건설폐기물 구분 :</td> <td>②총 보관량 : (톤)</td> </tr> <tr> <td>③보관장소 면적 : (㎡)</td> <td>④허용보관량 : (톤)</td> </tr> <tr> <td>⑤보관기간 : ~</td> <td>⑥관리책임자 :</td> </tr> <tr> <td colspan="2">⑦보관시 주의사항</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2">⑧운반예정장소</td> </tr> </tbody> </table> <p>비 고</p> <p>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p> <p>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p>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p>- 수집운반차량에는 규격에 맞는 차량표지판을 부착함</p> <p>-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싣지 아니함</p> <p>- 건설폐기물 보관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p> <p>- 공사 완료 후 폐기물은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함.</p> <p>- 보관시설 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함</p>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기 준	확 보 사 항
<p>3. 중간처리의 경우</p> <p>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p> <p>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 관호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p> <p>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페멘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p> <p>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p>	<p>- 종류별로 분리·선별함</p> <p>- 규정에 맞춰 처리함</p> <p>-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함</p> <p>- 기준을 만족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재활용함</p> <p>- 해당 기준을 준수함</p> <p>- 가연성 잔재물을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함</p>

7.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제5항관련)

허가기준		확 보 사 항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처리능력</th> <th>규격</th> <th>수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차 죠크라샤</td> <td rowspan="4">800톤/일</td> <td>160kW</td> <td>1</td> <td></td> </tr> <tr> <td>2차 콘크라샤</td> <td>220kW</td> <td>1</td> <td></td> </tr> <tr> <td>3차 콘크라샤</td> <td>220kW</td> <td>1</td> <td></td> </tr> <tr> <td>4차 버켓타격박리기</td> <td>110kW+22kW</td> <td>1</td> <td></td> </tr> </tbody> </table> <p>- 처리능력: 100톤/시(800톤/일)</p>					시설명	처리능력	규격	수량	비고	1차 죠크라샤	800톤/일	160kW	1		2차 콘크라샤	220kW	1		3차 콘크라샤	220kW	1		4차 버켓타격박리기	110kW+22kW	1																							
	시설명	처리능력	규격	수량	비고																																													
	1차 죠크라샤	800톤/일	160kW	1																																														
	2차 콘크라샤		220kW	1																																														
	3차 콘크라샤		220kW	1																																														
4차 버켓타격박리기	110kW+22kW		1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처리능력</th> <th>규격</th> <th>수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스칼핑스크린</td> <td></td> <td>15kW</td> <td>1</td> <td></td> </tr> <tr> <td>진동스크린 1</td> <td></td> <td>30kW×2</td> <td>1</td> <td></td> </tr> <tr> <td>진동스크린 2</td> <td></td> <td>30kW×2</td> <td>1</td> <td></td> </tr> <tr> <td>진동스크린 3</td> <td></td> <td>30kW×2</td> <td>1</td> <td></td> </tr> <tr> <td>진동스크린 4</td> <td></td> <td>15kW</td> <td>1</td> <td></td> </tr> <tr> <td>자력선별기</td> <td></td> <td>10kW</td> <td>1</td> <td></td> </tr> <tr> <td>자력선별기</td> <td></td> <td>7.5kW</td> <td>2</td> <td></td> </tr> <tr> <td>풍력선별기</td> <td></td> <td>55kW</td> <td>3</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처리능력	규격	수량	비고	스칼핑스크린		15kW	1		진동스크린 1		30kW×2	1		진동스크린 2		30kW×2	1		진동스크린 3		30kW×2	1		진동스크린 4		15kW	1		자력선별기		10kW	1		자력선별기		7.5kW	2		풍력선별기		55kW	3	
시설명	처리능력	규격	수량	비고																																														
스칼핑스크린		15kW	1																																															
진동스크린 1		30kW×2	1																																															
진동스크린 2		30kW×2	1																																															
진동스크린 3		30kW×2	1																																															
진동스크린 4		15kW	1																																															
자력선별기		10kW	1																																															
자력선별기		7.5kW	2																																															
풍력선별기		55kW	3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없음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없음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규격</th> <th>용량</th> <th>수량</th> <th>시설규격(능력)</th> </tr> </thead> <tbody> <tr> <td>1,000m²×14.7mH</td> <td>14,700m³</td> <td>1</td> <td>허용보관량 : 22,050톤</td> </tr> </tbody> </table>					규격	용량	수량	시설규격(능력)	1,000m ² ×14.7mH	14,700m ³	1	허용보관량 : 22,050톤																																					
규격	용량	수량	시설규격(능력)																																															
1,000m ² ×14.7mH	14,700m ³	1	허용보관량 : 22,050톤																																															

허가기준		확 보 사 항		
시설	(7) 계량시설 :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트릭스케일 1식 보유		
	(8)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굴삭기	경기02노2404 (평적 0.96㎡) 경기02보3022 (평적 1.15㎡)	2
		로더	경기03노2991 (평적 5.3㎡)	1
		※ 변경 없음		
	(9)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 없음		
기술 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 변경 없음		
자본금 규모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 변경 없음		
사업장 부지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 309-34(150㎡), 309-9(839㎡), 311-1(612㎡), 310-1(463㎡), 310(2,307㎡), 309-10(803㎡), 309-21(937㎡), 309-12(109㎡), 309-13(326㎡) - 총면적 : 6,546㎡ (총 9필지) ※ 사업장 부지 : 4,471㎡ → 6,546㎡로 변경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가. 파쇄시설 (조크라샤 - 1기)

1) 명 칭 : 분쇄시설

2) 형 식 : JAW Crusher (JC-4840)

3) 규격 및 용적 :

- 투입크기 : 1,250(W)×1,000(L)
- 동 력 : 160kw
- 수 량 : 1 SET
- 처리능력 : 400톤/시
- 용 도 : 골재 분쇄

4) 연료 및 동력 :

- 동 력 : 160Kw * 1대

5) 운전 및 가동방법 : 적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을 220RPM으로 고속회전시켜 분쇄한다.
분쇄된 폐기물은 진동스크린으로 이송하여 입자 SIZE를 선별한다.

나. 분쇄시설 (콘크리샤 - 1기)

1) 명 칭 : 분쇄시설

2) 형 식 : CONE Crusehr (CC-1680)

3) 규격 및 용적 :

- 투입크기 : 185mm
- 동 력 : 220Kw
- 수 량 : 1 SET
- 처리능력 : 300톤/시
- 용 도 : 골재 분쇄

4) 운전 및 가동방법 : 선별시설에서 이송된 골재를 1050RPM으로 고속회전시켜 분쇄한다.
분쇄된 폐기물은 진동스크린으로 이송하여 입자 SIZE를 선별한다.

다. 분쇄시설 (콘크리샤 - 1기)

1) 명 칭 : 분쇄시설

2) 형 식 : CONE Crusehr (CSH-1680)

3) 규격 및 용적 :

- 투입크기 : 185mm
- 동 력 : 220Kw
- 수 량 : 1 SET
- 처리능력 : 300톤/시
- 용 도 : 골재 분쇄

4) 운전 및 가동방법 : 선별시설에서 이송된 골재를 1050RPM으로 고속회전시켜 분쇄한다.
분쇄된 폐기물은 진동스크린으로 이송하여 입자 SIZE를 선별한다

라. 선별시설 (진동피더 - 1기)

1) 명 칭 : 선별시설

2) 형 식 : 진동피더 (VF-1248)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1,200(W)×4,800(L)

- 동 력 : 30kw

- 수 량 : 1 SET

- 용 도 : 토분 및 파쇄입도 이하의 골재 분리.선별

4) 운전 및 가동방법 : 호퍼에 투입 시 충격을 견디어 내도록 설계.

쪼크라샤 투입 전 진동 작용으로 적체 없이 깨끗한 원석을 공급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원석의 조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마. 선별시설 (스칼핑스크린 - 1기)

1) 명 칭 : 선별시설

2) 형 식 : 스칼핑스크린 (SS-1842)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1,600(W)×3,000(L)

- 동 력 : 15kw

- 수 량 : 1 SET

- 용 도 : 1차 파쇄기 양질의 원석을 공급하는데 적합.

4) 운전 및 가동방법 : 쪼크라샤 투입전 사용. 진동운동으로 골재를 일정분량 투입용도.

쪼크라샤의 골재막힘 현상 감소

바. 분리 및 선별시설 (진동 스크린 - 1기)

- 1) 명 칭 : 진동 스크린
- 2) 형 식 : 경사식 진동 스크린(OP1-2470)
-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2,400(W)×7,000(L)
 - 동 력 : 30kw×2EA
 - 수 량 : 1 SET
 - 용 도 : 입자크기를 선별한다.
- 4) 운전 및 가동방법 : 스크린망을 설치하여 입자선별한다.

사. 분리 및 선별시설 (진동 스크린 - 2기)

- 1) 명 칭 : 진동 스크린
- 2) 형 식 : 경사식 진동 스크린(OP2-2470)
-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2,400(W)×7,000(L)
 - 동 력 : 30kw×2EA
 - 수 량 : 2 SET
 - 용 도 : 입자크기를 선별한다.
- 4) 운전 및 가동방법 : 스크린망을 설치하여 입자선별한다.

아. 분리 및 선별시설 (진동 스크린 - 1기)

- 1) 명 칭 : 진동 스크린
- 2) 형 식 : 경사식 진동 스크린(OP3-1536)
-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1,500(W)×3,600(L)
 - 동 력 : 15kw
 - 수 량 : 1 SET
 - 용 도 : 입자크기를 선별한다.
- 4) 운전 및 가동방법 : 스크린망을 설치하여 입자선별한다.

자. 분리 및 선별시설 (전자석 선별기 - 1기)

- 1) 명 칭 : 자력선별기
- 2) 형 식 : 자동분리형 전자석선별기(SEMS-200)
-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3,460(W)×1,660(L)
 - 전자석크기 : 1,600(W)×1,350(L)
 - 전자석동력 : 7.5kW+ 10kW
 - 모터동력 : 7.5W
 - 수 량 : 1 SET
 - 용 도 : 폐기물의 금속성물질 분리
- 4) 연료 및 동력 :
 - 전자석동력 : 10Kw x 1SET
- 5) 운전 및 가동방법 : 전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물질을 분리한다.

차. 분리 및 선별시설 (전자석 선별기 - 2기)

- 1) 명 칭 : 자력선별기
- 2) 형 식 : 자동분리형 전자석선별기(SEMS-150)
- 3) 규격 및 용적 :
 - 크 기 : 3,160(W)×1,560(L)
 - 전자석크기 : 1,500(W)×1,200(L)
 - 전자석동력 : 5.5kW+ 7.5kW
 - 모터동력 : 5.5kW
 - 수 량 : 2 SET
 - 용 도 : 폐기물의 금속성물질 분리
- 4) 연료 및 동력 :
 - 전자석동력 : 7.5Kw x 2SET
- 5) 운전 및 가동방법 : 전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물질을 분리한다.

카. 풍력선별기(송풍기 - 3기)

- 1) 명 칭 : 풍력선별기(송풍기)
- 2) 형 식 : 편흡입식
- 3) 정 압 : 100 mmAq
- 4) 기 종 : 8Limit Load Fan
 - 회전수 : 700 ~ 900 RPM
 - 풍 량 : 100 ~ 700 m³/분
 - 동 력 : 55kw(75HP)
- 5) 용 도 : 폐기물중 가벼운 이물질을 풍력을 이용하여 제거.
- 6) 운전 및 가동방법 : 송풍기 바람을 이용하여 폐기물중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9.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내역서

■ 변경 전

배출공정	억제시설	내 용	비고
야 적	방진벽(망)	- H = EGI(7.0M) × 방진망(4.0M) × 1,092M	
신키 및 내리기	이동식 살수시설	- 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	
수 송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시설 (2.2M×5.3M×1.0M)	
이 송	살수시설	- 직경 20mm × 10개	

■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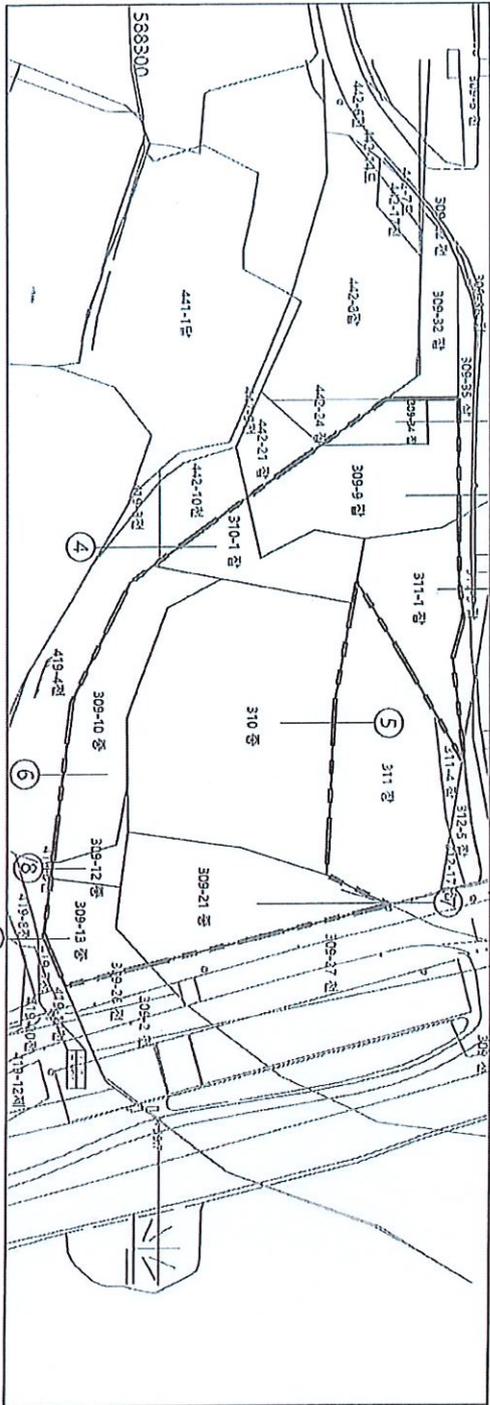
배출공정	억제시설	내 용	비고
야 적	방진벽(망)	- L형용벽(3.0m)×Pvc방음벽(8.0m)×방진망(1.0m)=100m - L형용벽(2.5m)×Pvc방음벽(10.0m)×방진망(1.0m)=32m - L형용벽(3.8m)×Pvc방음벽(10.0m)×방진망(1m)=274m	
신키 및 내리기	이동식 살수시설	- 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 - 고압살수기 3기	
수 송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시설 (2.2M×5.3M×1.0M)	
이 송	살수시설	- 직경 20mm × 10개(파쇄시설 및 먼지발생시설)	

<p>내 리 는 경우)</p>	<p>나.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p>	<p>● 기존(360도회전Sprinkler) : ① 1700H* 2기, 1900H* 3기, ② 진동스크린상부:8000H*1기</p> <p>나.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p>
<p>3. 수송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가나바사목 및 차목만 적용)</p>	<p>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p> <p>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p> <p>다. 도로가 비포장 시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p> <p>1) 자동식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p> <p>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f/cm² 이상</p>	<p>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p> <p>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p> <p>다. “해당없음” [살수차 운행으로 도로 비산먼지 발생 방지]</p> <p>1) 이동식차량 살수시설 : 규모 : 1.2톤, 수량:1대</p> <p>라.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p> <p>1)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운영 - 규모 : 2.2mW*5.3mL*1.0mH - 수량 : 1기</p> <p>마.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p>

	<p>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p> <p>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p>	<p>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p> <p>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골재를 야적하는 부지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10km 이하로 운행</p>
<p>4. 이 송</p>	<p>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p>	<div data-bbox="817 589 1323 91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처리시설 옥내화 및 여과 집진시설 3기 가동 예정.</p> </div>

영 지 도

S=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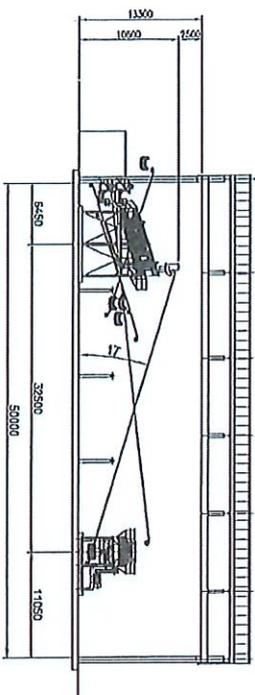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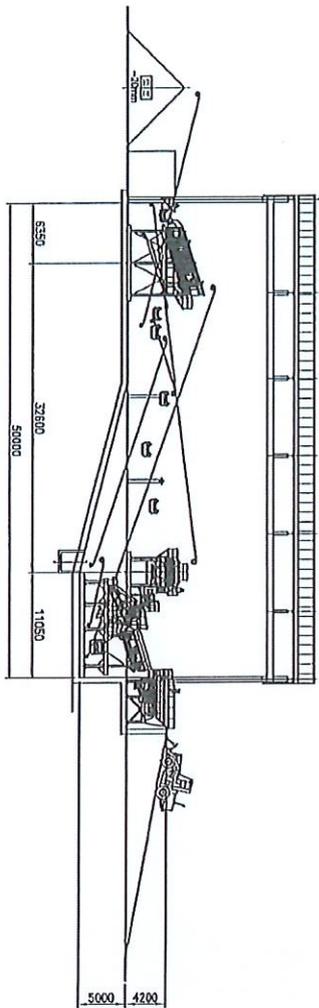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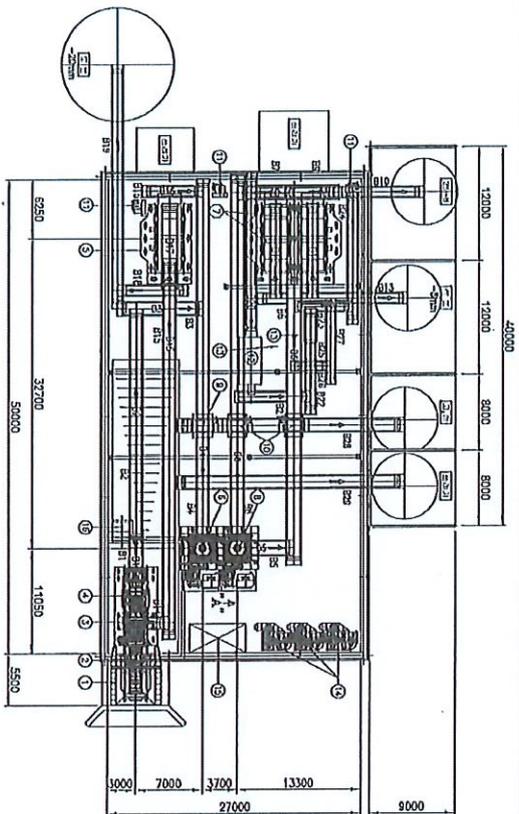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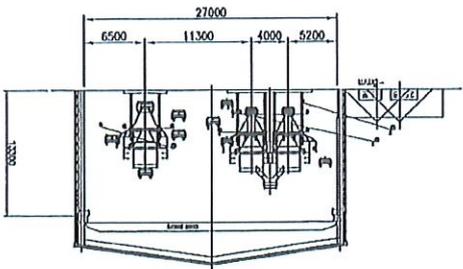


필 입 영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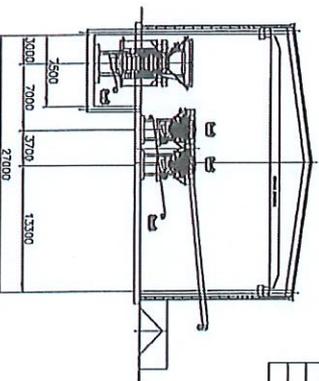
필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성	비고
			전면	부분	주소	성명		
1	상백동	309-34	150	150	상백동 309-9	주사외사신영		
2	-	309-9	839	839	상백동 309-9	주사외사신영		
3	-	311-1	612	612	상백동 309-9	주사외사신영		
4	-	310-1	483	483	동두천시 상의동 552면적 35 (상백동)	주사외사신영		
5	-	310	2307	2307	동두천시 강변서로 331 (상백동)	가동주권대안성로회 동두천영문로회		
5	-	309-10	803	803	동두천시 강변서로 331 (상백동)	가동주권대안성로회 동두천영문로회		
7	-	319-21	937	937	동두천시 강변서로 331 (상백동)	가동주권대안성로회 동두천영문로회		
8	-	309-12	109	109	동두천시 강변서로 331 (상백동)	가동주권대안성로회 동두천영문로회		
9	-	309-13	305	305	동두천시 강변서로 331 (상백동)	가동주권대안성로회 동두천영문로회		
소			6546	6546				

주 소 지 면적 927(546㎡)

시정정	공사정	영역회사	개발권인자	부여권인자	설계자	설계일자	축	중	비	영	지	도	비	영	
네오피알디	상백동 지원순환시설 개발사업	HA (주) 한 울 이 엔 제 HAN WOOL E & C CO., LTD.	윤태원	강기정	전부영	2024. 05.	1 : 600								



SECTION "A-A"



NO.	DESCRIPTION	SIZE	QTY	POWER(KW)	REMARK
1	BEARING	20x2	1	-	
2	BEARING	16-12x8	1	30	
3	BEARING	SS-14x2	1	15	
4	HAFT SHAFT	42-48x40	1	160	
5	1st BEARING	60-72x70	1	200	
6	2nd BEARING	CC-150	1	220	
7	2nd SHAFT	60-72x70	2	200x2	
8	2nd SHAFT	CSH-180	1	220	
9	SHAFT ASSEMBLY	SS304-200	1	724x10	
10	SHAFT ASSEMBLY	SS304-150	2	654x7.5x2	
11	SHAFT ASSEMBLY	500 DIA	3	550	
12	2nd BEARING	BT180x200	1	1100x2	
13	2nd BEARING	GT-150	1	15	
14	BEARING	60x2	3	20x3	
15	BEARING	30x10	1	-	
16	BEARING	30x10x10	1	7.5	
B-1	NO.1 BEAT CONVERTER	1050Wx20	1	15	
B-2	NO.2 BEAT CONVERTER	1050Wx20	1	22	
B-3	NO.3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4	NO.4 BEAT CONVERTER	1050Wx20	1	37	
B-5	NO.5 BEAT CONVERTER	1200Wx20	1	15	
B-6	NO.6 BEAT CONVERTER	1200Wx20	1	45	
B-7	NO.7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8	NO.8 BEAT CONVERTER	1050Wx20	1	30	
B-9	NO.9 BEAT CONVERTER	1050Wx20	1	7.5	
B-10	NO.10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11	NO.11 BEAT CONVERTER	1050Wx20	1	7.5	
B-12	NO.12 BEAT CONVERTER	1050Wx20	1	7.5	
B-13	NO.13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14	NO.14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15	NO.15 BEAT CONVERTER	1050Wx20	1	37	
B-16	NO.16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17	NO.17 BEAT CONVERTER	1200Wx20	1	15	
B-18	NO.18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19	NO.19 BEAT CONVERTER	1050Wx20	1	22	
B-20	NO.20 BEAT CONVERTER	1050Wx20	1	11	
B-21	NO.21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2	NO.22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3	NO.23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4	NO.24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5	NO.25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6	NO.26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7	NO.27 BEAT CONVERTER	1200Wx20	1	7.5	
B-28	NO.28 BEAT CONVERTER	1200Wx20	1	15	
B-29	NO.29 BEAT CONVERTER	1200Wx20	1	15	
B-30	NO.30 BEAT CONVERTER	1200Wx20	1	45x20W	

* TOTAL POWER = 1055.5KW

본 도면 기준 모든 치수는(단위) mm로 표시하며, 치수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수상 차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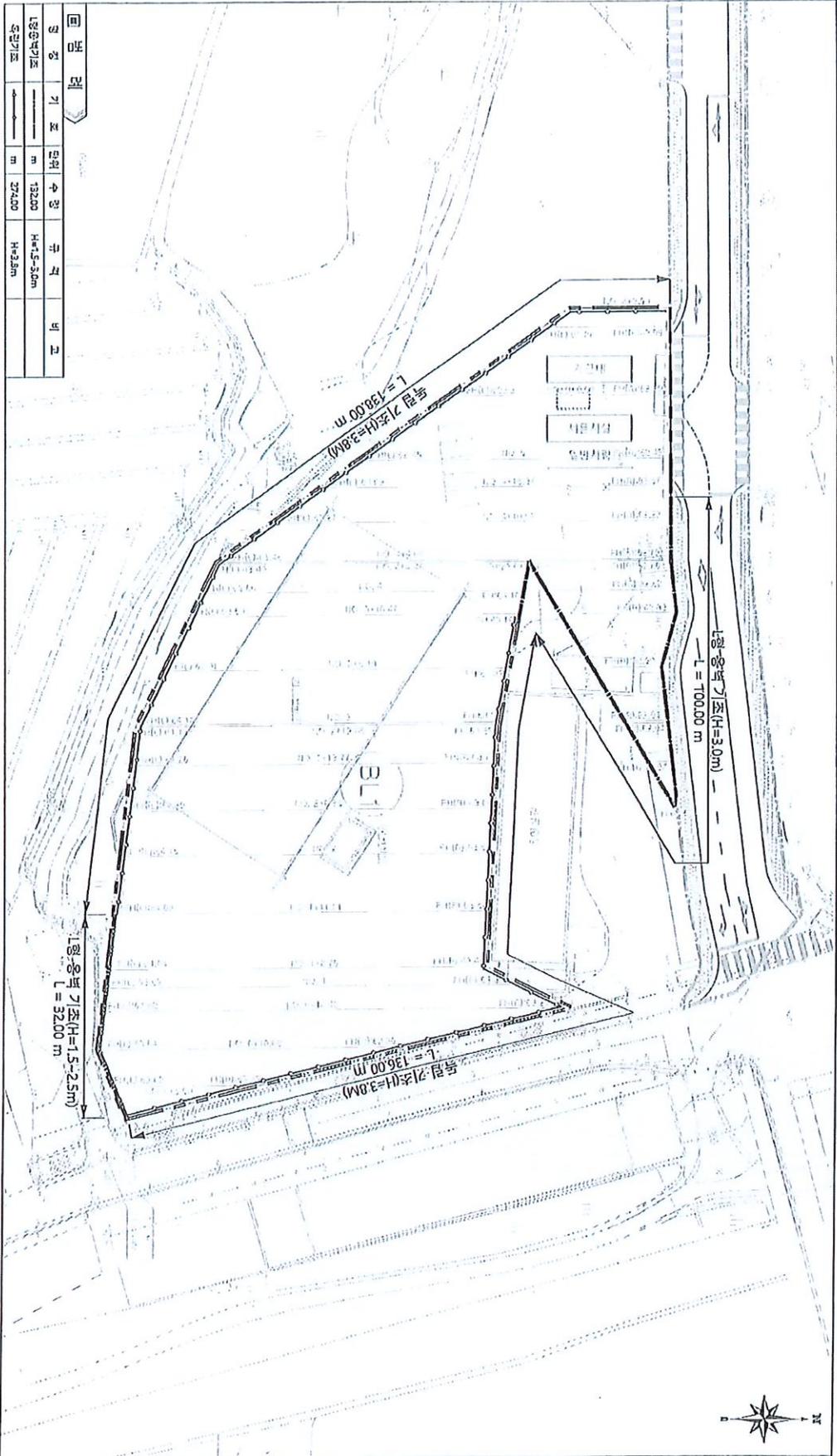
NO.	DATE	REVISIONS	ISS	CHK	APP	NOTE

DATE	REVISIONS	ISS	CHK	APP	NOTE
2024.12.25					
1/250					

(주)신일
리시이클링 플랜트
별첨도 (B-30)

구조물 계획 평면도

S = 1 :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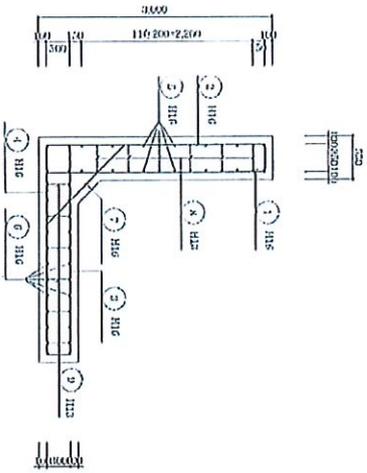
회령			
구분	기호	단위	수량
동립기조		m	132.00
옹벽기조		m	32.00
벽고		m	H=3.5m

시공명	공사명	승역회사	주요담당자	필요담당자	실제지	연계일자	척	단	비판명	도면번호	영원번호
(주)신영	상계동 자연순환관시설 변경(변경)사업	신영(주)원울이엔씨 NINE NEW WOOD E&C CO. LTD.	윤태환	강기영	한복영	2024. 07.	1 : 600	트	상사 계획 평면도	F-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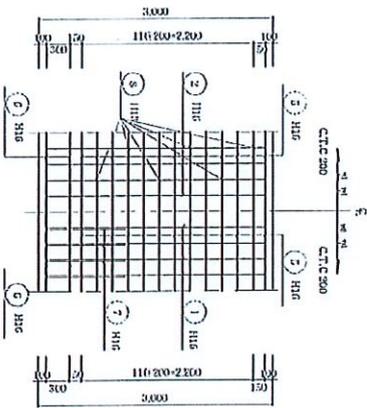
1형응벽(H3.0M) 상세도

S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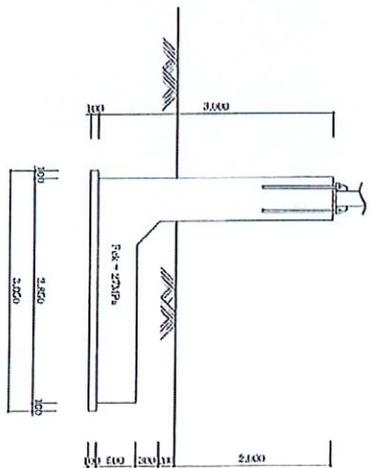
표면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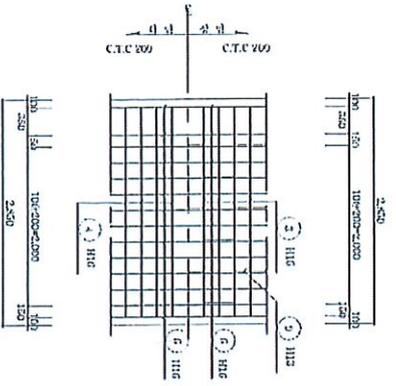
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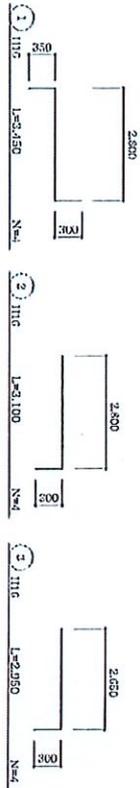
일반도



바닥면



철근상세도



철근재료표

번호	각각 길이 (mm)	개수	중량 (kg)	단면적 (mm ²)	중량계 (kg)	중량계 (TON)	비고
1	H16	3,650	4	13,800			3% 절단
2	-	2,100	4	12,400			
3	-	2,650	4	11,800			
4	-	2,650	4	10,600			
5	-	1,810	26	27,010			
6	-	1,040	24	24,120			
7	-	1,695	1	6,291			
소계				111,294	1,590	0.174	0.174
8	H16	0,550	6	2,400			3% 절단
9	-	0,200	6	3,000			
소계				6,500	0.495	0.005	0.005
총계							0.182

시정장	공사명	공역회사	계약책임자	면허책임자	설계자	설계일자	주최	구조물명	도면번호	일련번호
-----	-----	------	-------	-------	-----	------	----	------	------	------

(주) 신영 HIA (주) 한울이엔씨 윤태현 김기영 한복음 2024. 07. NONE 구조물명 1형응벽(H3.0M) 상세도 F-002

HIA (주) 한울이엔씨
HAN WOOL E & C CO., LTD.

윤태현 김기영

한복음 2024. 07.

NONE

구조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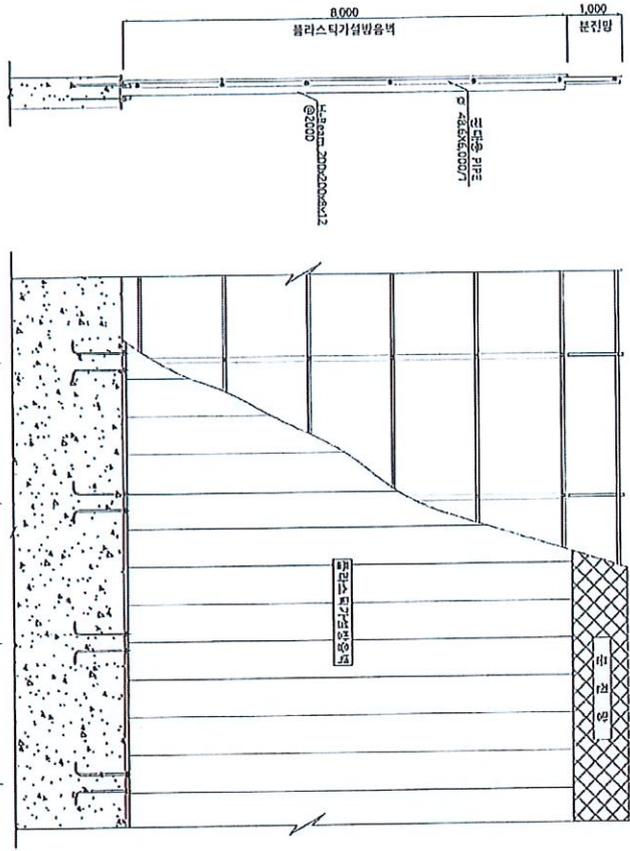
1형응벽(H3.0M) 상세도

F-002

일련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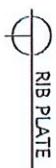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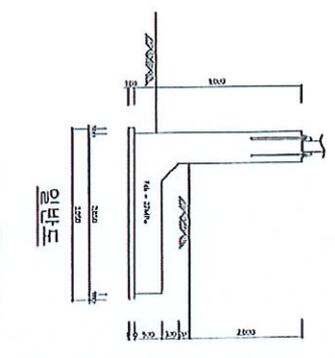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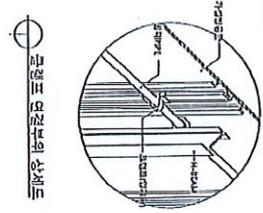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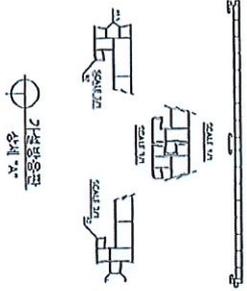
기설웹스(양키형) H=8.0m

S = NONE



중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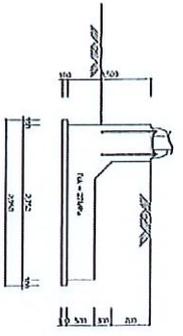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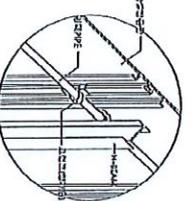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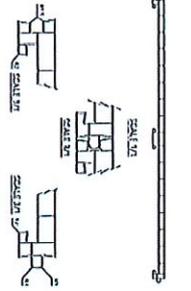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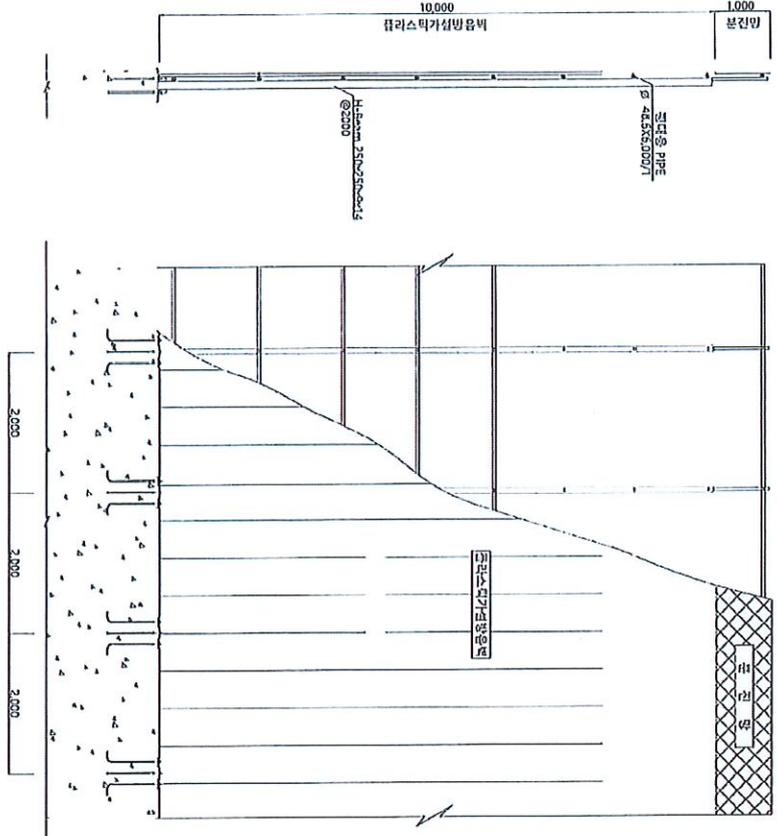
재료표

종류	규격	수량	수량	비고
POC강판(양키형)	672 X 2200 X 2T	1/2	1.00	
H-BEAM	200 X 200 X 8 X 12 X 48.9	4	20.00	
강근(양키형)	4.0 X 48.5 X 2.1T	2	1.00	
강근(양키형)	4.0 X 48.5 X 2.1T	2	1.00	
RIB PLATE	400 X 400 X 30T	4	0.51	
RIB PLATE	50 X 150 X 10T	4	2.04	
강근	100 X 100	4	2.04	
강근	1/2 차단	4	2.00	
POC강판(양키형)		4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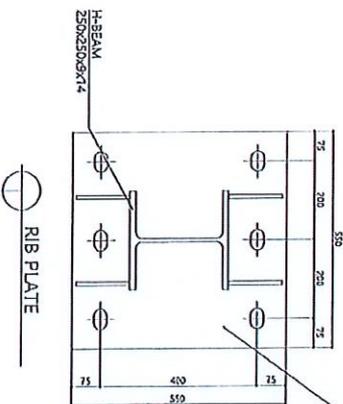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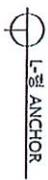
시공장	공사명	용역회사	과장/책임자	분장/책임자	설계자	설계일자	규격	구조종류	도면명	도면번호	일련번호
(주)신영	상쾌동 지원수원관천시설 변경(역정)사업	HA (주) 한을이엔씨 HAN WOOD & CO. LTD.	양태영	강기정	한복원	2024. 07.	NONE	구조종류	기설웹스(양키형) H=8.0m	F-005	

가설헬스(양카형) H:10.0m [2/2]

S = NONE



일반도



RIB PLATE

재료표

종류	규격	단위	수량	비고
PORECEMENT-블록	600 X 1000 X 200	M3	15.20	
H-BEAM	250 X 250 X 9.4 X 7.24	KG	399.24	
단공콘크리트	60 X 40.6 X 2.3T	㎡	1.33	
방수막	방수막	㎡	1.33	
라이프 플레이트	550 X 550 X 10T	EA	0.51	
RIB PLATE	140 X 250 X 10T	EA	2.94	
앵커	M20 X 1000	EA	2.94	
조립도	1/2 적탄	EA	4.84	
가설용기판	EA	EA	2.94	

14

시정장	(주) 신명	공사업	용역회사	HA (주) 한 이 엔 씨 HANWOOD E&C CO., LTD.	계약책임자	필수책임자	실제자	계약일자	2024. 07.	주 적	NONE	구 조 물 공	가설헬스(양카형) H:10.0m (2/2)	도면번호	F-007	인원번호
-----	--------	-----	------	-----------------------------------------	-------	-------	-----	------	-----------	-----	------	---------	-------------------------	------	-------	------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수신 (주)신명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조건부 적합 통보[(주)신명]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민원-26073(2024.11.21)호로 제출하신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조건부 적합 통보하오니,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기준과 각 관련 법령의 적합 통보 조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1년이 초과 할 경우 적합 통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적합 통보를 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이전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서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3.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1부. 끝.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이현호	청소행정팀장	대체휴무	환경보호과장	진결 2025. 3. 7. 김태화
-----	-----	--------	------	--------	-----------------------

협조자

시행	환경보호과-11121	(2025. 3. 7.)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환경보호과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251	팩스번호 031-860-2678	/ gusgh3346@korea.kr	/ 비공개(7)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조건부 적합 통보서

상 호	(주)신명
대 표 자	이주한
소 재 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9 일원
업 종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금속류,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변경계획

구 분	허가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장 부지	-면적 3,300㎡이상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총 4,471㎡ - 소재지 (11필지) 상패동 309-8 (115㎡) 상패동 309-9 (937㎡) 상패동 309-23 (7㎡) 상패동 309-24 (178㎡) 상패동 309-25 (35㎡) 상패동 311-1 (852㎡) 상패동 311-2 (31㎡) 상패동 310-1 (268㎡) 상패동 309-31 (195㎡) 상패동 309-32 (201㎡) 상패동 648-17 (1,652㎡)	총 6,546㎡ - 소재지 (9필지) 상패동 309-34 (150㎡) 상패동 309-9 (839㎡) 상패동 311-1 (612㎡) 상패동 310-1 (463㎡) 상패동 310 (2,307㎡) 상패동 309-10 (803㎡) 상패동 309-21 (937㎡) 상패동 309-12 (109㎡) 상패동 309-13 (326㎡)	적합
파쇄· 분쇄 시설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	800톤/일 (3기)	800톤/일 (4기) *처리용량 변동 없음	적합

□ 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결과 (조건부 가)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도로과]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사업자의 건물 면적, 사업장 계약기간,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근거하여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함

[일자리경제과]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일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람

[환경보호과]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 기존시설: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폐쇄)를 득하여야 함
 - 신규시설: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신규)를 득하여야 함
 - 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호5호 건설업에 해당 되는 경우 법 제43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 관리법
 -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신고를 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부지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변경허가 시 첨부 할 것

[환경사업소]

- 수도법
 - 상수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급수 가능 여부 및 급수관의 신설(증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지사(031-860-9339)의 사전검토를 받으신 후 사업 추진 및 급수 공사를 신청하시기 바람
- ※ 협의 없이 진행한 수도시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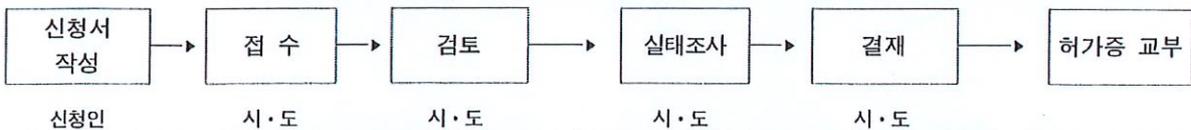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 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1년이 초과할 경우 적합 통보 취소
- 적합 통보된 변경계획서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 이전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허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타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

첨부서류	<p>가. 허가신청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p>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p>수수료</p> <p>신규: 40,000원</p> <p>변경: 15,000원</p>
------	--------------------------------------------------------------------------------------------------------------------------------------------------------------------------------------------------------------------------------------------------------------------------------------------------------------------------------------------------------------------------------------------------------------------------------------------------------------------------------------------------------------------------------------------------------------------------------------------------------------------------------------------------------------------------------------------------------------------------------------------------------------------------------------------------------------------------------------	--------------------------------------------------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에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⑬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⑯ 및 ⑳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

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페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제지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 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

- 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페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수신 (주)신명 귀중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처리[상패동 309-9 외 8필지]

1. 민원-16444(2024. 7. 18.)호로 제출하신 건축허가 신청서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건축허가 필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신축) 내역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층수·용도·세대수 · 면적(㎡)]	비 고
상패동 309-9 외 8필지	[주1동]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1,249.28㎡ [주2동] 지상1~4층 일반철골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72.00㎡ <u>연면적 합계: 1,321.28㎡</u>	신 축

나. 건축주: (주)신명(115811-*****)

다.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 건축허가 면허세: 34,000원
- 국민주택채권 금액: 1,720,000원

2.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까지 관련법 이행사항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건축허가 필증 1부(별도송부).
2. 관련법 이행사항 1부. 끝.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봉선우	건축팀장	최유선	건축과장	전결 2025. 3. 7. 김윤세
협조자					
시행	건축과-10251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401	팩스번호	031-860-2672	/ qhdltjsdn995@korea.kr	/ 비공개(7)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관련법 이행사항

대지위치 : 상패동 309-9 외 8필지

건축주 : (주) 신명

협의부서	회신내용
민원봉사과	건축허가 처리시 지적측량(경계) 시행 후 공사에 착공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전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합병 등)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 사용승인전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건물번호판의 설치위치, 크기 등을 명시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표준형 건물번호판보다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제작/부착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사용 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부착 사진 2장(근경과 원경)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 기술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시고, 본 건축물은 사용전에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36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 수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기본법』 제1417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가 아니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 면적이 30,000㎡ 미만이기엔 건축허가(신축)를 수립해도 됨. 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과 관련하여 개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지는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부터 7일 이내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자리경제과	도시의 등록된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p>○ 건설폐기물처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배출시설을 변경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사전 변경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비산먼지발생사업을 변경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사전 변경 신고를 득하여야 함. <p>○ 건축(신축)</p> <p>『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p>

환경보호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변경 시 사전 (변경)신고를 득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서를 득하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공유재산,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공유수면 등 저촉시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 저촉사항 없음.(도시계획선 내 공사계획 없을 경우) ○ 해당 진출입로 부지는 향후 선업교~양주시 경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정으로, 추후 도로공사 준공시 도시계획선 내 진출입로 및 우수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 도로개설공사 전, 중으로 해당 부지 조성을 위한 일시점용(공사용 시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 사유가 발생할 시 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람.
도시재생과	- 면허세 45,000원을 납부 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이행보증금 347,028,400원을 예치 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시 보증기간을 2025. 10. 31. 기한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사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준수 및 아래 허가조건 준수 바랍니다.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시행 중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및 지도담당공무원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3. 도로변에 토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사 중 토사 등이 인접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야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인근 농지 및 산림, 기옥 등에 잡식 및 피해 발생이 없도록 토목공법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우기 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허가 경계표시(경계말뚝)를 명확히 하여 허가구역 외의 토지가 형질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개발행위 준공 전까지 허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경계말뚝)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 전, 중 공사로 인해 민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 기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9.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특히 구조물(보강도 및 콘크리트옹벽 등)에 대한 공사 중 사진은 세부공종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2025. 3. 31. 이전에 개발행위연장신청 및 보증보험 기간연장하여야 합니다.
환경사업소	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저촉사항없음(10㎡ 미만) ※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사항 변경시 별도 협의

	<p>0. 지하수 : 개발 및 폐지시 별도 법적절차를 이행</p>
<p>환경사업소</p>	<p>1. 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규모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납부문의:031-860-3189) 후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지사(031-860-9339)와 급수관의 신설(증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건축물 착공 전 사전검토 및 급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없이 진행한 수도시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p> <p>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상수도 공사비 납부영수증 /파일명은 상수도공사비납부영수증으로 등록바람 - 세움터 등록사항: 대규모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파일명은 상수도공사비납부영수증으로 등록바람 <p>2.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반드시 급수공사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기 바랍니다.</p> <p>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급수 공사 신청서 /파일명은 급수신청서로 등록바람. <p>3. 수도법 제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급수설비(수도꼭지,사위기 등)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인증 제품(절수1등급 제품 우선 적용검토)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절수설비 등급 표시, 현장사진 첨부,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현장사진, 환경표지인증서 /파일명은 절수설비로 등록바람
<p>환경사업소</p>	<p>1. 기존 공공하수도(우,오수) 접합시 기급적 맨홀접합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맨홀접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코어드렐로 천공 후 새들분기관 시공</p> <p>2. 관 접합시에는(우/오수 접합) 이음부에 대한 CCTV촬영 제출(맨홀접합시 해당없음)</p> <p>3. 건축물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 처리를 위해 흠통받이 설치 시, 흠통받이 하부에 빗물받이 설치.</p> <p>4. 부지내 우수가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 설치.</p> <p>5.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 하수도(우/오수) 연결부분 시공사진 첨부(전,중,후,원경,근경)</p> <p>6. 맨홀뚜껑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은 추락방지 맨홀뚜껑 반드시 설치</p> <p>7. 개인관로에 하수관 연결시 소유주와 협의하시기 바람.</p> <p>8. 하수도 공사는 상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시공하고, 기타 하수도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p> <p>※ 공공관로가 부지내에 저축될 경우 반드시 우리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공관로 상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동두천소방서</p>	<p>1. 상기 대상은 동두천시 상패동 309-9 외 8필지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에 따른 실무협의된 건으로 관련서류 및 소방시설 설치 계획이 적합하므로 건축허가 동의 처리하고자 합니다.</p> <p>2. 협조 및 안내사항</p> <p>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축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p> <p>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규정에 따라 소방착공신고 대상이며,</p> <p>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라. 상기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동두천소방서(화재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제동의 협의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내용 -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알림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경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u>착공 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착공신고 시 첨부</u>하시기 바라며, 공사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기초 및 옹벽 등 수직부재의 배근 위치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실측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제능기부 사업」에 따른 지정 건축사가 사용승인 시 증명자료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측량성과도는 <u>한국국토정보공사(권고사항) 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업체가 실시한 자료로 제출.</u> ○ 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 내 분진, 간이화장실 미설치, 소음, 도로변 자재 무단 적치 등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책임 하에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급적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사비(자재, 노무, 식대 등)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지급 완료하시어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알림문서 내 ‘알림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신고 신청 전 상·하수도 연결 및 전기 사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 난간, 출입구 등 적절한 장소에 국기개양대(국기꽂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장사항) 조정 시 우리시 시화인 황매화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신청 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무작위 선정)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신청 시 감리자지정통보서 및 지정된 공사 감리자와의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가 체결한 계약서(관계전문기술자 포함) 등 관계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라 지반조사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제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 계획서 등을 준수하시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공 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법 이행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준공 관련 서류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고 단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증서 등을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의3에 적합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단열재, 창호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제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임대·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65%(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65%, 3억원~10억원 미만 60%, 10억원~20억원 미만 50% 차등 적용] ○ 착공 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맞지 않는 강관비계 설치로 인해 고용 노동부의 감독·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28-1961)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도시가스 관련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굴착/건물철거 공사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EOCS)에 굴착공사 계획 신고 및 굴착개시 통보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 신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http://www.eocs.or.kr ☎1644-0001] • 도시가스 관련 문의 : 대표 콜센터 1566-6116 / 통합상황실 031-951-5050 2) 도시가스 설치 시 사전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경우, 건축 설계 및 허가 전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및 배관 위치확인 등을 대륜이엔에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7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및 ‘고시 제 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냉방부하의 60%이상이 가스냉난방으로(GHP, 흡수식냉온수기 등)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산재생 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검토 시, 고효율의 연료전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설치 문의 : 대륜이엔에스 경기영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 담당자 ☎ 031-951-0013~14], [산업/영업/냉난방용 담당자 ☎031-951-0016~18/0029] ○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 후,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p>- 설치 문의는 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031-860-8267, 8268</p> |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5 0162 4829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127-81-21842 (주)신명 이주한	피보험자	127-83-00502 경기도 동두천시
보험가입금액	금 삼역사천칠백이만팔천사백 원정 ₩347,028,400-	보험료	₩1,515,420-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03월 1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966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허가받은 권리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예치한 보증보험 증권은 양수인 명의의 신규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복구명령을 명하는 경우 복구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계약내용	[행정행위내용] 인허가종류 인허가조건 인허가기간 소재지 인허가번호 인허가보증금액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및 제89조 2025년 03월 10일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309-9번지 외 8필지 ₩347,028,400-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2025년 03월 1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장

이영준



증권 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송도 알파고
		모집자 고유번호	허현아 20110586030015 (032-260-1188)
	지점	송도지점	032-859-0021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2층 (송도동 7-50)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중로세 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신임홍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ISO 37301
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한국경영인협회 인증기업

-00000-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계약자의 변경
 - 3. 피보험자의 변경
 -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1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2025-건축과-신축허가-2 (2025-3920086-1101-2)
건축주	(주)신명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지번	309-9외 8필지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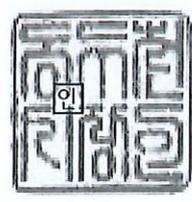
대지면적	6,546 m ²
건축물명	자원순환시설
주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게활용시설)
건축면적	1,287.13 m ²
건폐율	19.66 %
연면적 합계	1,321.28 m ²
용적률	20.184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1	제1동	1,249.28	2	제2동	72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동두천시



#첨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관련지번	지목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34	잡종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0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0 - 1	잡종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1 - 1	잡종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0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2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3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21	종교용지



관련법 이행사항

대지위치 : 상패동 309-9 외 8필지

건축주 : (주) 신명

협의부서	회신내용
민원봉사과	<p>건축허가 처리시 지적측량(경계) 시행 후 공사에 착공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전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합병 등)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민원봉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 사용승인전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함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건물번호판의 설치위치, 크기 등을 명시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3. 표준형 건물번호판보다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제작/부착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사용 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부착 사진 2장(근경과 원경)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 기술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시고, 본 건축물은 사용전에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36조) 2.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 수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제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기본법」 제1417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가 아니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 면적이 30,000㎡ 미만이기에 건축허가(신축)를 수립해도 됨. - 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과 관련하여 개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부터 7일 이내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자리경제과	<p>도시의 등록된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p>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을 변경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사전 변경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변경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사전 변경 신고를 득하여야 함. ○ 건축(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보호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변경 시 사전 (변경)신고를 득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적합 통보서를 득하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공유재산,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공유수면 등 지족시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 저촉사항 없음.(도시계획선 내 공사계획 없을 경우) ○ 해당 진출입로 부지는 향후 선업교~양주시 경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정으로, 추후 도로공사 준공시 도시계획선 내 진출입로 및 우수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 도로개설공사 전, 증으로 해당 부지 조성을 위한 일시점용(공사용 시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 사유가 발생할 시 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람.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준수 및 아래 허가조건 준수 바랍니다.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시행 중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및 지도 담당공무원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3. 도로변에 토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사중 토사 등이 인접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야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인근 농지 및 산림, 가옥 등에 침식 및 피해 발생이 없도록 토목공법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우기 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허가 경계표시(경계말뚝)를 명확히 하여 허가구역 외의 토지가 형질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개발행위 준공 전까지 허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경계말뚝)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전.중 공사로 인해 민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 기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9.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특히 구조물(보강토 및 콘크리트 옹벽 등)에 대한 공사 중 사진은 세부공종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사업기간 내에 공사 준공이 어려울 경우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 사업기간 연장 및 보증보험의 기간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미목까지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 ○ 개발행위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개발행위허가지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사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특히 구조물(보강토 및 콘크리트옹벽 등)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한 공사 중 사진은 세부공종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환경사업소</p>	<p>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저촉사항없음(10m' 미만) ※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사항 변경시 별도 협의</p> <p>0. 지하수 : 개발 및 폐지시 별도 법적절차를 이행</p>
<p>환경사업소</p>	<p>1. 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규모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납부문의:031-860-3189) 후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지사(031-860-9339)와 급수관의 신설(증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건축물 착공 전 사전검토 및 급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없이 진행한 수도시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p> <p>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상수도 공사비 납부영수증 /파일명은 상수도공사비납부영수증으로 등록바람 - 세움터 등록사항: 대규모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파일명은 상수도공사비납부영수증으로 등록바람 <p>2.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반드시 급수공사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기 바랍니다.</p> <p>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급수 공사 신청서 /파일명은 급수신청서로 등록바람. <p>3. 수도법 제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급수설비(수도꼭지,사위기 등)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인증 제품(절수1등급 제품 우선 적용검토)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절수설비 등급 표시, 현장사진 첨부,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현장사진, 환경표지인증서 /파일명은 절수설비로 등록바람
<p>환경사업소</p>	<p>1. 기존 공공하수도(우오수) 접합시 기압적 맨홀접합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맨홀접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코어드릴로 천공 후 새들분기관 시공</p> <p>2. 관 접합시에는(우/오수 접합) 이음부에 대한 cctv촬영 제출(맨홀접합시 해당없음)</p> <p>3. 건축물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 처리를 위해 홈통받이 설치 시, 홈통받이 하부에 빗물받이 설치.</p> <p>4. 부지내 우수가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 설치.</p> <p>5.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 하수도(우/오수) 연결부분 시공사진 첨부(전,중,후,원경,근경)</p> <p>6. 맨홀뚜껑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은 추락방지 맨홀뚜껑 반드시 설치</p> <p>7. 개인관로에 하수관 연결시 소유주와 협의하시기 바람.</p> <p>8. 하수도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시공하고, 기타 하수도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관로가 부지내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우리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공관로 상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동두천소방서</p>	<p>1. 상기 대상은 동두천시 상패동 309-9 외 8필지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에 따른 실무협의된 건으로 관련서류 및 소방시설 설치 계획이 적합하므로 건축허가 동의 처리하고자 합니다.</p> <p>2. 협조 및 안내사항</p> <p>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축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p> <p>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규정에 따라 소방착공신고 대상이며,</p>

	<p>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라. 상기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동두천소방서(화제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제동의 협의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내용 -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알림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경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착공신고 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공사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기초 및 옹벽 등 수직부재의 배근 위치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실측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제능기부 사업」에 따른 지정 건축사가 사용승인 시 증명자료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측량성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권고사항) 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업체가 실시한 자료로 제출. ○ 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 내 분진, 간이화장실 미설치, 소음, 도로변 자재 무단 적치 등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책임 하에 현장 관리에 철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위해 가급적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사비(자재, 노무, 식대 등)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지급 완료하시어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알림문서 내 ‘알림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신고 신청 전 상·하수도 연결 및 전기 사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 난간, 출입구 등 적절한 장소에 국기계양대(국기꽂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장사항) 조정 시 우리시 시화인 황매화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신청 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무작위 선정)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신청 시 감리자지정통보서 및 지정된 공사 감리자와의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관계자가 체결한 계약서(관계전문기술자 포함) 등 관계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라 지반조사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 계획서 등을 준수하시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공 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법 이행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준공 관련 서류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고 단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증서 등을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의3에 적합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단열제, 창호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입대·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65%(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65%, 3억원~10억원 미만 60%, 10억원~20억원 미만 50% 차등 적용] ○ 착공 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맞지 않는 강관비계 설치로 인해 고용 노동부의 감독·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28-1961)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도시가스 관련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굴착/건물철거 공사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EOCS)에 굴착공사 계획 신고 및 굴착개시 통보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 신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http://www.eocs.or.kr ☎1644-0001] • 도시가스 관련 문의 : 대표 콜센터 1566-6116 / 통합상황실 031-951-5050 2) 도시가스 설치 시 사전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경우, 건축 설계 및 허가 전 도시가스 공급기능여부 및 배관 위치확인 등을 대륜이엔에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7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및 「고시 제 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부하의 60%이상이 가스냉난방으로(GHP, 흡수식냉온수기 등)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산재생 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검토 시, 고효율의 연료전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설치 문의 : 대륜이엔에스 경기영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 담당자 ☎ 031-951-0013~14], [산업/영업/냉난방용 담당자 ☎031-951-0016~18/0029] ○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 후,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설치 문의는 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031-860-8267, 8268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2025-3920000-0008666	접수일자 2025-04-15	처리일자 2025-05-13	처리기간 3일
------------------------------	--------------------	--------------------	------------

신고인	건축주 (주)신명
	전화번호 031-863-1484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서로 339-18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①지번 309 - 9 외 8필지
허가(신고)번호 2025-건축과-신축허가-2	허가(신고)일자 2025년03월11일
착공예정일자 2025년04월28일	준공예정일자 2025년12월28일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김현주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28808	협회 회원번호 M1-21623
	사무소명 제이앤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인천광역시-건축사사무소-906	
	사무소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 5층	(전화번호 : 032-568-3309)	
	도급계약일자 2025년04월04일	도급금액 25,740,000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홍제태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2025년04월03일		
	회사명 (주)장형기업	도급금액 4,945,465,800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24411001796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토목건축공사업-04118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 1층	(전화번호 : 032-562-1658)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김동오 외 1인	자격증 토목기사	자격번호 99207060216H

④ 공사감리자	성명 김현주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28808		
	사무소명 제이앤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인천광역시-건축사사무소-906		
	사무소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 5층 (마전동, 문정빌딩)	(전화번호 : 010-6218-1241)		
	도급계약일자 2025년04월15일	도급금액 18,139,000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상	[] 비대상
	기관명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사업자등록번호 203-81-25439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⑥ 관계 전문기술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수신 (주)신명, (주)장형기업 귀중
(경유)

제목 착공신고서 처리[상패동 309-9 외 8필지]

1. 민원-8666(2025. 4. 15.)호로 제출하신 건축물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착공신고 현황

- 가. 허가번호: 2025-건축과-신축허가-2
 - 나. 건축주: (주)신명
 - 다. 대지위치: 상패동 309-9 외 8필지
 - 라. 주 용 도: 자원순환관련시설
 - 마. 주 구 조: 일반철골구조
 - 바. 공사종별: 신축
2. 건축허가 시 부여된 관련법 이행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제출하신 품질시험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0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적정] 통보하오니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착공신고 필증(별도송부) 1부. 끝.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봉선우 건축팀장 최유선 건축과장 전결 2025. 5. 13.
김윤세

협조자

시행 건축과-20484 (2025. 5. 13.)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401 팩스번호 031-860-2672 / qhdtjsdn995@korea.kr / 비공개(7)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1. 29.>

착공신고필증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축	허가(신고)일자	2025년03월11일	
건축주	(주)신명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9 외 8필지			
대지면적	6,546 m ²			
건축물명칭	자원순환시설	주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면적	1,287.13 m ²	건폐율	19.66 %	
연면적 합계	1,321.28 m ²	용적률	20.1845 %	
착공예정일자	2025년04월28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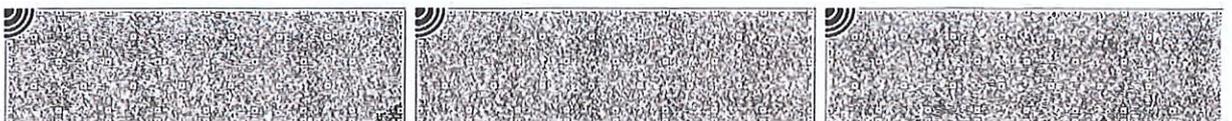
2025년05월13일

동두천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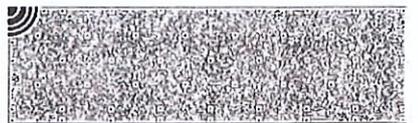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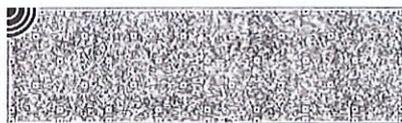
<p>「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p>	<p>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첨부

착공신고필증

대지위치	지번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2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2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3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0 - 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1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 (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2025-건축과-신축허가-2	접수번호 2025-3920000-0011405	접수일자 2025-05-20	처리일자 2025-06-09
-----------------------------------------------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허가사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건축
------	--------------------------------------------------------------------------------------------------------------------------------------------------------------------------	-------------------------------------------------------------------------------------------------------------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신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115811-0004005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서로 339-18 (전화번호 : 031-863-1484)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건축주 (주)신명 (서명 또는 인) _____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김현주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28808	협회 회원번호 M1-21623
	사무소명 제이앤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인천광역시-건축사사무소-906
	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 5층	(전화번호 : 032-568-3309)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지번	309-9외 8필지	관련지번	별첨참조
	지목	잡종지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6,546 m ²	건축면적	1,231.765 m ²
건폐율	18.81 %	연면적 합계	1,245.965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1,245.965 m ²	용적률	19.03 %
④ 건축물 명칭	자원순환시설	주건축물수	2 동
		부속 건축물	동 m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총 주차대수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호	
		가구	4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m ²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수신 (주)신명 귀중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신청서 처리[상패동 309-9 외 8필지]

1. 민원-11405(2025. 5. 20)호로 제출하신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신청서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내역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층수·구조·용도·면적(㎡)]
상패동 309-9 외 8필지	[주1동]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1,203.965㎡ [주2동]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21.000㎡ 지상2층 일반철골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21.000㎡

나. 건축주: (주)신명(115811-*****)

다.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 건축허가면허세: 34,000원

라. 설계변경 내역

○ 건축면적: 1,287.13㎡ → 1,231.765㎡

○ 연면적 및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321.28㎡ → 1,245.965㎡

○ 건 폐 율: 19.66% → 18.81% ○ 용 적 률: 20.18% → 19.03%

○ 건축물 높이: 주1동 - 19m, 주2동 - 11m → 주1동 - 18.8m, 주2동 - 7.2m

○ 건축물 위치변경(1m 이상)

2. 최초신고 시 부여된 협의조건 및 관련법 이행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 이행사항 1부.

2. 건축신고 필증(별도송부) 1부. 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1.2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사항변경 (변경차수 : 1)	허가번호	2025-건축과-신축허가-2 (2025-3920086-1101-2)
건축주	(주)신명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지번	309-9 외 8필지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6,546 m ²
건축물명	자원순환시설	주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면적	1,231.765 m ²	건폐율 18.81 %
연면적 합계	1,245.965 m ²	용적률 19.03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1	제1동	1,203.965	2	제2동	42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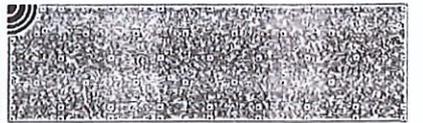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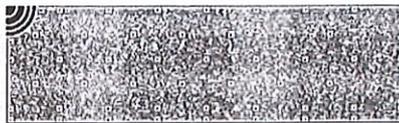
동두천시



#첨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관련지번	지목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0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2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13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21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09 - 34	잡종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0	종교용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0 - 1	잡종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11 - 1	잡종지





관련법 이행사항

대지위치 : 상패동 309-9 외 8필지
 건축주 : (주)신명

협의부서	회신내용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폐쇄)를 득하여야 함 신규시설: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신규)를 득하여야 함 - 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 건설업에 해당 되는 경우 법 제43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 전체에 오수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에 저촉사항 없음 ○ 물환경보전법 : 기 협의사항 준수하시기 바람
환경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사착공일 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득하시기 바람. 다만,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업체 또는 시설 설치자에게 위탁처리한 후 처리내역(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람. ○ 아울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하기 바라며, 폐기물배출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공사현장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에는 소량(300kg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잡석,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폐기물만 담아 배출해야 함. ※ 300kg 이상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해야 함.. ○ 공사 완료 후 주변 청결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람.
환경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저촉사항없음(10㎡ 미만) ※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사항 변경시 별도 협의 ○ 지하수 : 개발 및 폐지시 별도 법적절차를 이행
환경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규모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납부문의:031-860-3189) 후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p>동두천수도지사(031-860-9339)와 급수관의 신설(증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건축물 착공 전 사전검토 및 급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없이 진행한 수도시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상수도 공사비 납부영수증 /파일명은 상수도공사비납부영수증으로 등록바람 - 세움터 등록사항: 대규모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 /파일명은 상수도공사비납부영수증으로 등록바람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반드시 급수공사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급수 공사 신청서 /파일명은 급수신청서로 등록바람. ○ 수도법 제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급수설비(수도꼭지,사위기 등)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인증 제품(절수1등급 제품 우선 적용검토)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절수설비 등급 표시, 현장사진 첨부,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등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등록사항: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현장사진, 환경표지인증서 /파일명은 절수설비로 등록바람
<p>환경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협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p>동두천소방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 상패동 309-9 외 8필지 자원순환관련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실무협의된 건으로 관련서류 및 소방시설 설치 계획이 적합하므로 건축허가 동의 처리하고자 함. ○ 협조 및 안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축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규정에 따라 소방착공신고 대상이며,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동두천소방서(화재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재동의 협의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내용 -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등
<p>알림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경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착공신고 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공사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기초 및 옹벽 등 수직부재의 배근 위치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실측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제능기부 사업」에 따른 지정 건축사가 사용승인 시 증명자료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측량성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권고사항) 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른 측량업 등록업체가 실시한 자료로 제출.

- 공사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시기 바람.
- 공사현장 내 분진, 간이화장실 미설치, 소음, 도로변 자재 무단 적치 등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책임 하에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급적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람.
- 아울러 공사비(자재, 노무, 식대 등)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지급 완료하시어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람.
- 민원인 알림문서 내 '알림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착공신고 신청 전 상·하수도 연결 및 전기 사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옥상 난간, 출입구 등 적절한 장소에 국기계양대(국기꽃이)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권장사항) 조경 시 우리시 시화인 황매화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신청 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무작위 선정) 받아야 함.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신청 시 감리자지정통보서 및 지정된 공사 감리자와의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건축관계자가 체결한 계약서(관계전문기술자 포함) 등 관계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라 지반조사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 계획서 등을 준수하시어 시공하시기 바람.(시공 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법 이행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준공 관련 서류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고 단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증서 등을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의3에 적합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단열재, 창호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람.

기타사항

-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임대·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65%(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65%, 3억원~10억원 미만 60%, 10억원~20억원 미만 50% 차등 적용]
- 착공 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맞지 않는 강관비계 설치로 인해 고용 노동부의 감독·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28-1961)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도시가스 관련 협조사항
 - 1) 도로 굴착/건물철거 공사 시 유의사항
 -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BOCS)에 굴착공사 계획 신고 및 굴착개시 통보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굴착공사 신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http://www.eocs.or.kr> ☎1644-0001]
 - 도시가스 관련 문의 : 대표 콜센터 1566-6116 / 통합상황실 031-951-5050
 - 2) 도시가스 설치 시 사전 검토사항
 -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경우, 건축 설계 및 허가 전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및 배관 위치확인 등을 대륜이엔에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7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및 '고시 제 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부하의 60%이상이 가스냉난방으로(GHP, 흡수식냉온수기 등)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산재생 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검토 시, 고효율의 연료전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도시가스 설치 문의 : 대륜이엔에스 경기영업팀
 - [주택용 담당자 ☎ 031-951-0013~14], [산업/영업/냉난방용 담당자 ☎031-951-0016~18/0029]
- 한국전력공사
 -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 후,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설치 문의는 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031-860-8267, 8268

민원신청 확인서

관리번호 : 2025-3920000-4376118

발급일 : 2025년06월25일

접수번호	2025-3920000-P609289		
신청일시	2025년06월25일 16:49:50		
접수일시	2025년06월25일 16:49:50		
민원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처리에정기한	2025년08월05일 (30일)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담당부서	건축과
신청인	이주한		
대리신청인	김현주 (민원신청 공인인증)		
※수수료	없음	PG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수수료는 PG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두천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수신 (주)신명
(경유)

제목 2025년 제1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우리시로 제출하신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2025. 8. 22.(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 의 결 과 ▣

- 가. 심의일시: 2025. 7. 14.(월)
- 나. 참석대상: 동두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5인
- 다. 장 소: 서면심의
- 라. 심의안건: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설계변경) 계획(안)
- 마.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붙임 심의결과 1부, 끝.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봉선우	건축팀장	최유선	건축과장	전결 2025. 8. 7. 김윤세
협조자					
시행	건축과-35103	(2025. 8. 7.)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401	팩스번호	031-860-2672	/ qhdtjsdn995@korea.kr	/ 비공개(7)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 두 천 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수신 (주)신명 귀중
(경유)

제목 2025년 제1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 7. 14.(월)에 개최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공 시 조치계획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공사 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 두 천 시 장



주무관	봉선우	건축팀장	최유선	건축과장	전결 2025. 9. 9. 김윤세
협조자					
시행	건축과-40070	(2025. 9. 9.)		접수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생연동)			/ www.ddc.go.kr
전화번호	031-860-2401	팩스번호	031-860-2672	/ qhdtjstdn995@korea.kr	/ 비공개(7)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